

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보고서 2018-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김은정 · 이상정 · 박신아 · 김주일

【책임연구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공동연구진】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신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주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 1절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과 목적	9
제 2절 유니세프 아동영향 평가	17
제 3절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	32
제3장 국내외 영향평가 고찰	37
제 1절 국내 영향 평가	39
제 2절 국내 아동영향 평가	66
제 3절 해외 아동영향 평가	80
제4장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안	101
제 1절 평가대상 및 영역	103
제 2절 대상 선정 및 평가 체계	116
제 3절 도입방안	122
제5장 결론 및 제언	131
제 1절 결론	133
제 2절 제언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3

표 목차

〈표 2-1〉 아동영향 평가 관련 개념 정의	13
〈표 2-2〉 아동영향 평가의 성공 조건	15
〈표 2-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 원칙의 주요 내용	19
〈표 2-4〉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기본권 유형별 주요 내용	20
〈표 2-5〉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21
〈표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	21
〈표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23
〈표 2-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및 방법	25
〈표 2-9〉 아동영향 평가에 관한 체크리스트 내용	26
〈표 2-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권리 영향 진단 체크리스트	27
〈표 3-1〉 중앙 및 지역별 성별평가기관 현황	42
〈표 3-2〉 법령과 계획의 분석평가 제외대상 근거	43
〈표 3-3〉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45
〈표 3-4〉 특정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46
〈표 3-5〉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47
〈표 3-6〉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48
〈표 3-7〉 환경보건법 제13조 1항(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50
〈표 3-8〉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50
〈표 3-9〉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제3조1항 관련)	51
〈표 3-10〉 건강영향 특성 요약	56
〈표 3-11〉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고용영향평가)	56
〈표 3-12〉 고용영향평가 대상	58
〈표 3-13〉 고용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수 추이	59
〈표 3-14〉 고용영향평가 추진 체계	60
〈표 3-15〉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1
〈표 3-16〉 문화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수 추이	63
〈표 3-17〉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 자체평가	63
〈표 3-18〉 문화영향평가항목 및 지표	64
〈표 3-19〉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65
〈표 3-20〉 종로구 아동영향평가의 범위	72

〈표 3-21〉 종로구 아동영향 평가 결과	74
〈표 3-22〉 성북구와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 체계	79
〈표 3-23〉 영향평가의 주요 정의	83
〈표 3-24〉 영향평가 수행의 단계	88
〈표 3-25〉 아동영향평가 점검 항목	88
〈표 3-26〉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	91
〈표 3-27〉 서부 호주의 아동영향평가조사표	92
〈표 3-28〉 뉴질랜드의 아동영향평가조사표	95
〈표 4-1〉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3
〈표 4-2〉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104
〈표 4-3〉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대상	105
〈표 4-4〉 타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에 대한 검토(평가)	107
〈표 4-5〉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검토	108
〈표 4-6〉 무차별원칙에 대한 검토	109
〈표 4-7〉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	110
〈표 4-8〉 참여권에 대한 검토	111
〈표 4-9〉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계획 검토	112
〈표 4-10〉 사후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	113
〈표 4-11〉 아동권리 증진 효과에 대한 검토	114
〈표 4-12〉 영역별 검토결과 종합	115
〈표 4-13〉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방식	117
〈표 4-14〉 각 안에 대한 평가 체계의 적절성	118
〈표 4-15〉 1안 : 전문기관(센터) 중심 평가 체계	119
〈표 4-16〉 2안 : 사업담당부서 중심 자체 평가 체계	121
〈표 4-17〉 전문가 중심 평가체계 안	124
〈표 4-18〉 전문가 중심 영향평가 수행 단계(안)	125
〈표 4-19〉 사업담당부서 중심 자체 평가 체계 안	126
〈표 4-20〉 대상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요소 (안)	127
〈표 4-21〉 영향평가 수행 요소(안)	128

그림 목차

[그림 3-1]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53
[그림 3-2] 건강영향평가 합의 절차	54
[그림 3-3] 성북구 아동영향분석평가 절차	68
[그림 3-4] 아동영향분석평가의 제도 틀	69
[그림 3-5]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	70
[그림 3-6] 서울시 아동영향분석평가 절차	72
[그림 3-7] 서부 호주 아동영향평가 단계	90
[그림 3-8] 뉴질랜드 아동영향평가 단계	94

부표 목차

[부표 1] 아동영향평가 점검지표(서울시)	143
[부표 2]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성북구)	145
[부표 3] 아동영향평가 연례점검표(성북구)	146
[부표 4] 아동영향평가 사전점검표(성북구)	147
[부표 5] 아동영향평가(공통) 사전점검표(성북구)	148
[부표 6]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양식(성북구)	149
[부표 7] 사전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담당부서(종로구)	150
[부표 8]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담당부서 (종로구)	151
[부표 9] 아동영향평표 작성안내문:담당부서(종로구)	152
[부표 10]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 평가부서(종로구)	154
[부표 11] 사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 : 담당부서(종로구)	156
[부표 12] 사후아동영향평가표 : 담당부서(종로구)	157
[부표 13] 사후아동영향평가표 : 평가부서(종로구)	159
[부표 14] 전문기관(센터)중심의 평가 체계의 장점	161
[부표 15] 전문기관(센터)중심의 평가 체계의 단점	162
[부표 16] 전문기관(센터)중심의 평가 체계에 대한 기타 의견	163
[부표 17]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의 장점	164
[부표 18]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의 단점	165
[부표 19]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에 대한 기타 의견	166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으로 아동보호 및 아동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아동에 관한 다양한 법률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아동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류정희, 2016)하는 등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조사되고 있다. 2013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결과, 아동의 삶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영역(주관적 행복, 행동과 생활양식,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모두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고, 2017년 동일 조사 결과, 타 영역은 많은 향상을 보였으나 주관적 행복지수 영역은 여전히 OECD 최하위 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유식 외, 2017).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며 아동의 권리와 존중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지수를 향후 10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가 없는 상황이다. 아동의 삶의 질 및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점차 시작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평가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한 아동관련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욕구와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당초 정책목표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현재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일부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동의 삶의 질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영향평가는 부

제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수록된 아동의 행복 및 안전, 돌봄 영역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이 수행될 뿐 아동의 관점이 반영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에 관한 삶의 질 행복권,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3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11조 2(아동정책영향평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로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제도화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체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아동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유니세프 아동영향평가, 국내 아동영향평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즉 아동영향평가는 UN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해될 수 있다. 3장에서는 국내 영향평가 사례와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고찰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영향평가 사례로는 건강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건강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사업담당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고용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어 각기 다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북구를 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요소는 아동영향

평가체계구축으로 평가의 지속성을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04년에 아동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현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모든 결정은 아동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 유사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아동특성에 따른(원주민) 영향평가 요소가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영향평가 사례는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와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현행의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된 영향평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제 4장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평가체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e-mail(웹조사)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평가체계, 평가영역,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사하였다. 제 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담고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과 목적

제2절 유니세프 아동영향 평가

제3절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

제 1절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과 목적

1.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채택 이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진·확산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강조하고, 이들의 기본 권리로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동 협약 제3조 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정립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박세경, 2016).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90여개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법제도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미 오래 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들에게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대한 아동영향 평가를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와 영연방 국가 등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동영향 평가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기본 권리가 아동영향 평가의 핵심원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하여 아동영향 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있다(송이은, 2017).

또한, 아동영향 평가는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증인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지정에 필요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박세경, 2016; 서영미, 2018; 송이은, 2017).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동영향 평가 체계의 구축여부이다.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적인 차원에서 용역사업을 통하여 아동영향 평가의 범위, 지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아동영향 평가를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은 평가방법이나 평가절차 및 과정의 유연성과 개방성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아동영향 평가와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정부가 아동영향 평가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의 다양한 기준과 범위에 따른 용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아동의 범주에 속한다(서영미, 2018).

영향 평가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 예측함으로써 구체화하는 모든 평가 작업을 지칭”한다(조홍식, 염태산, 김병수, 2014). 이러한 영향 평가의 개념 정의는 사전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의미하고 있다. 사전 영향 평가는 “계획단계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그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준현, 오현주, 2011). 즉, 사전 영향 평가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비롯하여 그의 다양한 잠재적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두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총체적인 영향 평가보다는 어느 특정한 차원이나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향 평가는 환경, 건강, 성별, 사회, 평등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국내·외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 평가는 사전 영향 평가의 기본 틀을 따르면서 특정한 차원이나 영역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 집중한다. 사전 영향 평가는 최근 그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전 영향 평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을 위한 참고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아동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도 이러한 영향 평가의 한 종류이다.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개념은 1987년 Freeman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 개념의 기본 논리는 공공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입안될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Corrigan, 2006). 그에 따르면 정책입안자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아동관련 입법에서도 그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송이은, 2017; Corrigan, 2006).

그 후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유사하다. 먼저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개념 정의를 대신하고 있다. 즉, 아동영향 평가에는 아동에 대한 영향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 및 제안된 정책, 법률 및 행정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민, 교통, 사회 보장, 세금 및 환경 문제와 같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관련이 없는 영역의 정책도 아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Corrigan, 2006).

Sylwander(2001)는 아동영향 평가를 정책, 전략, 프로그램, 법률, 프로젝트 또는 사업제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효과와 그 확산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및 도구의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향(impact)은 정책, 전략, 프로그램, 법률, 프로젝트 또는 사업제안이 특정 아동 또는 특정 아동집단이나 일반 아동에게 미치는 전체적, 직·간접적 효과로 정의된다(Sylwander, 2001).

또한 Payne(2007)은 아동영향 평가를 정책방안, 법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가

능한 직·간접적 영향을 밝히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영향 평가의 도입은 공공정책 실천에서 아동의 가시성(the visibility of children in public policy practices)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있다(Hanna, Hassall and Davies, 2006).

국내의 경우,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정책의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의 도입이 제안되고(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외, 2012; 윤철경, 김윤나, 2013), 2015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 참여 등과 함께 아동영향 평가를 아동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니세프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칙의 하나로 아동영향 평가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도 지금까지 논의된 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정책 영향분석 평가제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윤철경, 김윤나, 2013)에서 청소년영향 평가제도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될 때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년친화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영향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박영균, 조흥식, 장승원(2014)은 아동·청소년정책 영향 평가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그 상태를 규정짓거나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하여 미리 마련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나 수준을 따져보아야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도와 법, 정책,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한 영향 요소가 모두 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영향 평가를 종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법령, 사업, 프로젝트 등에 관해 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 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아동·청소년영향 평가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구체적인 아동·청소년영향 평가제도의 운영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조흥식, 엽태산, 김병수(2014)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할 수 있는 아동영향 평가방법을 검토하면서 아동영향 평가를 “정책, 법령, 결정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 방법, 도구를 통칭”하며, “법령·계획·사업 등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특정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의 차별적 분배를 파악”하고, “정책의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 규정을 검토하면, 아동복지법은 2016년 아동정책 영향 평가를 도입하면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아동정책 영향 평가라고 정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의 2).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아동영향 평가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령에서 의미하는 아동영향 평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 조례, 정책, 사업, 프로젝트 등이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서영미, 2018)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1〉 아동영향 평가 관련 개념 정의

연구자(년도) 및 법령	아동영향 평가 관련 개념 정의
Sylwander(2001)	정책, 전략, 프로그램, 법률, 프로젝트 또는 사업제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효과와 그 확산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및 도구의 조합
Payne(2007)	정책방안, 법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가능한 직·간접적 영향을 밝히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도구
윤철경, 김윤나(2013)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될 때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년친화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 청소년영향 평가제에 관한 개념 정의임
박영균, 조흥식, 장승원(2014)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법령, 사업, 프로젝트 등에 관해 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 * 아동·청소년영향 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임
조흥식, 엽태산, 김병수(2014)	정책, 법령, 결정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 방법, 도구를 통칭

연구자(년도) 및 법령	아동영향 평가 관련 개념 정의
서영미(2018)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 조례, 정책, 사업, 프로젝트 등이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제11조의 2)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 * 아동정책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임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전 영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일정 기간 시행 후 그 정책이나 사업의 단기적 결과 및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 않은 장기적 영향을 파악하여 의도한 방향의 변화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사후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많지 않다. 그러나 특정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에게 가지는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과 사업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되었는지, 해당 정책과 사업들이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의 실제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사후 영향 평가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한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아동영향 평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정 정책과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실행 전, 후 그리고 실행 중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아동영향 평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당 정책과 사업들의 실행 전, 후 혹은 실행 중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동영향 평가는 특정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추정하여 평가하고, 실행중이거나 실행된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조사하여 이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영향 평가는 특정 정책과 사업의 잠재적·실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계획 혹은 실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들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들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안의 마련을 유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들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영향 평가의 실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지 않다(송이은, 2017;

Mason & Hanna, 2009). Mason과 Hanna(2009)는 아동영향 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2-2〉 아동영향 평가의 성공 조건

아동영향평가의 성공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조직적, 정치적 헌신 • 충분한 예산 •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전략적·정책적 환경 • 다분야에서 숙련된 인력 • 목적의 명확성 • 투명하고 반복가능한 절차 •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 • 정책 및 검토 절차의 초기에 시행 • 지역에 대한 우수한 질적, 양적 자료 • 아동과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관의 참여 • 대안적 해결책 제시 • 평가과정의 어떻게 혜택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 • 발견사항에 대한 유익한 소통 • 지역 아동에게 주는 실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 일회적 평가가 아닌 지속적 평가의 수행
---------------	--

자료: Mason과 Hanna(2009)

서울시 아동영향 평가 지표 개발 연구(송이은, 2017)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영향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주요 조건으로 충분한 예산,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 아동과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관의 참여, 그리고 일회적 평가가 아닌 지속적 평가의 수행을 들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실효성 있는 아동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 평가의 원칙, 평가 주체, 평가범위 및 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체계 및 절차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 및 시기, 평가 결과의 환류(feedback)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아동 자신이므로 아동영향 평가에서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아동영향 평가의 목적

아동영향 평가의 목적을 몇 가지 차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영향 평가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의사결정자와 추진담당자들에게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은 아동영향 평가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아동영향 평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자와 추진담당자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영향 평가는 정책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영향 평가를 통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진과 확산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주일, 김옥진, 김아래미 외, 2016; 박영균, 조흥식, 장승원, 2014; 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Paton & Munro, 2006).

둘째, 아동영향 평가는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지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아동영향 평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개발과 결정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이 아동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다양한 차원의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게 하여 식별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간과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체계적인 아동영향 평가과정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이미 실행된 정책과 사업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아동영향 평가는 아동 관련 기관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김주일, 김옥진, 김아래미 외, 2016; 박영균, 조흥식, 장승원, 2014; 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ACT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Paton & Munro, 2006).

셋째, 아동영향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동의 주류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아동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쉽게 소외되어 이들의 권리와 욕구가 아동의 관점에서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교육, 복지, 여가, 주거, 가족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정책의 우선순위가 정부정책에서 그동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의 총괄·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아동영향 평가는 아동의 주류화와 아동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장벽을 초월한 협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영향 평가가 아동의 권리 증진이라는 분명한 기준 및 목표 제시를 통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에서 아동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 간의 갈등 완화와 협력 유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주일, 김옥진, 김아래미 외, 2016; 박영균, 조홍식, 장승원, 2014; 윤철경, 김윤나, 2013).

제 2절 유니세프 아동영향 평가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영향 평가의 절차와 체계의 구축여부가 중요하다. 아동영향 평가는 2019년 3월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나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미 아동영향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유니세프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아동영향 평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니세프에서 제안하는 아동영향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은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결의안을 바탕으로 개발

도상국은 물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아동의 권리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등장하였다(박세경, 2016). 이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의 전체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박세경, 2016; 서영미, 2018; 송이은, 2017).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혹은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노력의 형태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박세경, 2016).

홍승애(2012)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그 동안에 이루어진 다양한 개념 정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삶의 질’,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욕구 충족’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갖춘 사회”로 파악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동의 권리가 충실하게 실현되고 아동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춘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가 아동친화도시인 것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4대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 집약된다. 즉,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이다.

무차별의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의 비준국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보장의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즉, 비준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제9조 2항에서 규정된 자기의견 표명의 권리를 말한다. 이 협약의 제12조 제1항은 비준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의 제9조 제2항은 친자분리를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그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2-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 원칙의 주요 내용

일반 원칙	주요 내용	조항
무차별의 원칙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제3조 제1항
생명·생존과 발달보장의 원칙	비준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제6조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친자분리를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그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제12조 제1항, 제9조 2항

이러한 4대 일반 원칙들 가운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표

방하는 핵심 기본 원칙으로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아동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정책적·제도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한 사회의 아동관을 정립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박세경, 2016).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박세경, 2016).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생존권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보호권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전쟁과 재난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기본권 유형별 주요 내용

기본권 구분	주요 내용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보호 •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전쟁과 재난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발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현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논거를 제공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참여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자면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참여가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세경, 201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을 다 음 <표 2-5>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실현 되는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인 것이다.

<표 2-5>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아동의 4대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 지역사회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 • 가족·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 • 건강관리와 교육 등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권리 •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 동식물을 위한 녹색공간을 가질 권리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 문화 및 사회행사에 참여할 권리 • 민족·종교·소득·성·장애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
--------------------------	--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a)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 재구성

유니세프는 지방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9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추가되어 총 10가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

기본 원칙	주요 내용
원칙 1. 아동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 •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 고려
원칙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확실한 법률과 규정체계의 마련
원칙 3. 아동 권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국가적 차원의 행동계획 개발 • 지방자치단체 아동 권리 실행전략과 국가적 전략과의 합리적 연계
원칙 4. 아동 권리 담당 및 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의 마련 • 예를 들어 아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명확한 총괄부서나 조정기구의 마련
원칙 5. 아동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정책, 관련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중과 실행 전,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의 마련 • 아동영향 평가를 통해 법률과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시행 전에 조사하여 의사결정에 반영, 집행된 정책이나 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조사

기본 원칙	주요 내용
원칙 6. 아동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자원 확보 • 아동관련 예산 분석
원칙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권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수집 • 수집 분석된 통계와 정보의 공개
원칙 8. 아동 권리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민에게 아동 권리 홍보, • 학교 교과과정엔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포함,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
원칙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 • 아동 옴부즈맨이나 아동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원칙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 제공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a)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 재구성

유니세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온전히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원칙에 연계하여 안내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원칙은 각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박세경, 2016).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원칙과 관련된 과업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외에도 특히, 중앙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사업체, 매체, 전문가집단과 아동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협력적 동반관계의 구축 및 그의 효과적인 작동이 필요하다(박세경, 2016; 하정화, 박금식, 손주영, 2016).

체계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공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거버넌스 구축(Building Governance)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전담부서 및 팀 구성,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조례 제정, 아동 참여 체계 구축, 경찰청, 교육청, 의회, 사법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아동권리 홍보,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기본 원칙 가운데 원칙 1, 원칙 2, 원칙 4, 원칙 8, 원칙 9와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로 정기적인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 조사(Data Collection and Consultation)가 있다.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에서의 아동권리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

이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의 여섯 가지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실태 조사와 여섯 가지 일상생활 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 법체계의 분류 및 분석이 수행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선정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성인과 아동 모두의 의견 수렴이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 이 단계는 아동친화도시 기본 원칙 가운데 원칙 2, 원칙 6, 원칙 7과 관련된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세 번째 단계로 아동정책 전략 수립 및 사전 영향 진단(Scoping and Assessing)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통계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전략사업을 선정한다. 이 단계는 사업 담당 부서가 어떤 사업이 아동에게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전략 사업 담당 부서는 사전 영향을 진단하고 4개년 추진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 단계는 아동친화도시 기본 원칙 3과 관련된다.

구축한 체계와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Implementation) 단계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 전략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영향 진단을 통해 예측한 영향이 실제로 발현되었는지 확인한다. 즉, 전략 사업이 계획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중·단기 실적과 성과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아동친화도시 기본 원칙 5와 관련된다.

〈표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1. Building Governance	거버넌스 구축
	아동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 구축하기 아동친화도시 원칙①②④⑧⑨
	원칙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원칙② 아동권리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확실한 법률과 규정체계가 있습니까? 원칙④ 아동 권리를 고려하고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조정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원칙⑧ 주민, 정치인, 주요관료 등 모든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널리 알렸습니까?

24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p>원칙⑨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나 독립적 기구가 있습니까?</p> <p>To Do 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 및 팀 구성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 조례 제정 · 아동 참여체계 구축 · 경찰청, 교육청, 의회, 사법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 아동권리 홍보,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p>2. Data Collection & Consultation</p>	<p>정기적인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 조사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에서의 아동권리 현황 파악하기</p> <p>아동친화도시 원칙⑦⑥②</p> <p>원칙⑦ 지역사회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원칙⑥ 아동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을 분석했습니까? 원칙② 지자체의 법률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는지 검토했습니까?</p> <p>To Do Lis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여섯 가지 일상생활 영역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환경</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섯 가지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실태 조사 · 여섯 가지 일상생활 영역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사업, 예산, 법체계 분류 및 분석 * 위의 두 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성인과 아동 모두의 의견 수렴
<p>3. Scoping & Assessing</p>	<p>아동 정책 전략 수립 및 사전 영향 진단 통계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전략 사업 선정하기 사업 담당 부서에서 사업이 아동에게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 진단하기</p> <p>아동친화도시 원칙③</p> <p>원칙③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반영하는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했습니까?</p> <p>To Do 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아동친화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지자체 전략 사업 선정 · 전략 사업 담당 부서의 사전 영향 진단 및 4개년 추진 계획안 작성
<p>Implementation</p>	
<p>사업수행 구축한 체계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하기</p>	
<p>4. Monitoring & Evaluation</p>	<p>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 전략 사업 수행 과정 모니터링하기 영향 진단을 통해 예측한 영향이 실제로 발현되었는지 확인하기</p> <p>아동친화도시 원칙⑤</p> <p>원칙⑤ 집행된 정책이나 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조사했습니까?</p> <p>To Do 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사업이 계획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중·단기 실적과 성과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계획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영향 평가 실시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2017b)

이러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

시 인증을 신청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가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선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후 2년 이내에 자체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31개이며 추진도시는 61개에 이르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 2-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절차	방법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서면으로 신청
평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공하는 자체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
심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증	심의를 통과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인증유효기간: 3년 인증이후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중간평가 보고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 인증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지 평가
재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재인증 여부 결정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a)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 재구성

2. 유니세프 아동영향 평가

유니세프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10가지 기본 원칙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아동영향 평가는 이 기준의 다섯 번째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표 2-8〉 참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 5로 제시된 아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는 법과 정책, 관련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과 정책, 관련 사업의 실행 중과 실행 전,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영향 평가를 통해 법률과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이의 시행 전에 조사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영향 평가과정에서 아

동 관련 법률이나 정책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인 아동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아동영향 평가의 실행에서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장점이 통합된 혼합적 접근의 유용성이 제안되고 있다(송이은, 2017).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기본 원칙 각각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아동영향 평가에 관한 체크리스트 내용

기본 원칙	주요 내용
원칙 5. 아동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평가	해당 지역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 혹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이 있는가?
	아동에 대한 영향력 조사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리 실행되는가?
	아동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이런 조사 및 평가 과정이 취약 계층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는가?
	이 과정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진행절차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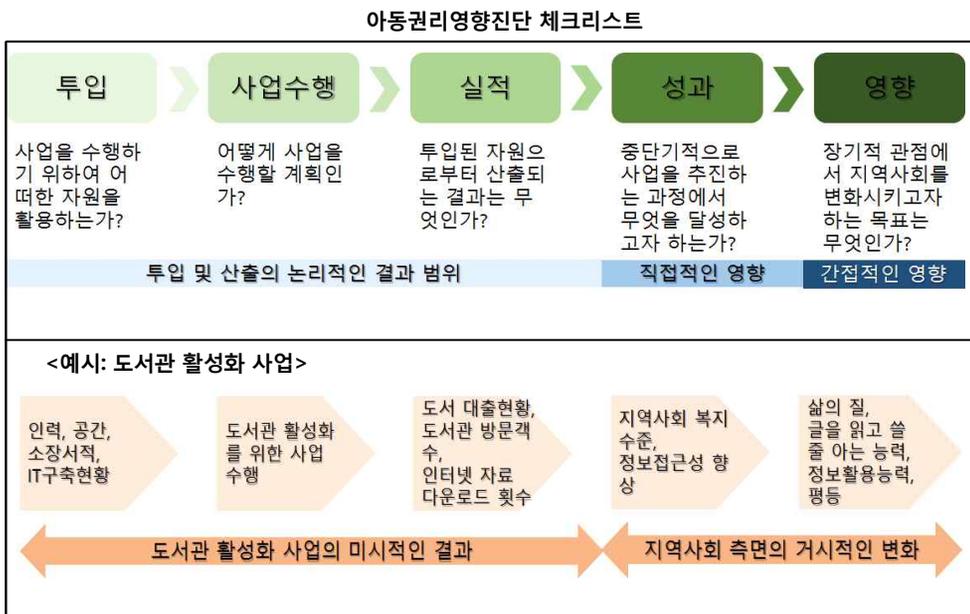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서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르면, 아동영향 평가는 아동영향 진단(impact assessment)과 아동영향 사후평가(impact evaluation)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의 세 번째 단계(아동정책 전략 수립 및 영향 진단)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이라는 작성 양식을 통하여 성과와 영향 및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아동영향 진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에서 아동영향 사후평가가 이루어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가이드 및 작성 예시’에서 아동영향 진단을 아동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을 직접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영향 진단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담당 공무원이다(박금식, 하정화, 손주영 외,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서식은 우선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작성 내용은 사업/조례/정책 명, 사업구분(기존, 신규),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친화도 영역(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전략과제, 추진근거, 기간, 지역(장소), 대상아동(연령별, 상황별), 소요예산, 사업배경 및 필요성(현황과 실태), 사업목표, 주요 추진방법, 추진방법 평가, 4개년 세부사업일정 등이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7). 전략사업 개요 및 내용 다음으로 아동 권리 영향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가 제시하는 아동권리영향 진단 체크리스트는 다음 <표 2-10>과 같다. 체크리스트에는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점검사항(비차별, 참여, 책무성, 안전, 자문, 홍보, 갈등,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영향은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표 2-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권리 영향 진단 체크리스트



<p>▪ 투입 (Input)</p> <p>- 투입이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인력,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시행기관·유관기관·협조기관 등)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내 100명의 아동들에게 1끼 4,000원의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계획한 경우, 배정한 예산(100명×4,000원×식사횟수), 급식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사업수행에 협조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개수 등이 투입요소가 됩니다.</p>	
예 산	<p>※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p>
인 력	<p>※ 투입인력 중 행정조직은 소속되어 있는 국, 과, 팀, 직함 등을 서술하여 주십시오.</p>
협조기관	<p>※ 협조 가능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두 서술해 주십시오.</p>
기 타	<p>※ 예컨대,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정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부서에서 해당 장비를 구매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당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면 물적 요소로서 기타 투입요소에 해당함. 또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질적 요소로서 기타 투입요소에 해당함.</p>
<p>▪ 실적 (Output)</p> <p>- 실적이란 투입된 자원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무상급식사업으로 인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동의 수, 무상급식 실시횟수 등이 실적이 됩니다.</p>	
<p>▪성과 (Outcome)</p> <p>- 기대효과라고도 하며, 사업수행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상태가 증진되는 것 등이 성과가 됩니다.</p>	

<p>▪ 영향 (Impact)</p> <p>- 영향이란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가 증진되어 부모와 아동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의료비와 사회보장보 험비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등이 영향이 됩니다.</p>				
<p>▪ 점검사항 - 각 항목별 검토완료 하였다면 검토내용 또는 검토내용을 적용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p>			<p>검토 완료</p>	<p>해당 없음</p>
<p>비차별</p>	<p>- 대상아동과 같은 연령대의 아동 중에서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체험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 내 영유아(경제상황), 부모 님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장애), 조부모 가정의 영유아(가족형태)</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경제상황, 장애, 성 정체성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접근성, 이용가능성, 비용부담의 적절성 등 기타 충분한 배려가 고려되었습니까? 예) 저소득가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경제상황과 장애라는 요소가 중첩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담당부서 간 업무연계방안 고려</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참여</p>	<p>-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어린 연령의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질문이 구성된 인터</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뷰, 청각장애 청소년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된 타운미팅 등</p>		
	<p>- 아동참여기구 또는 개별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아동참여기구의 정책 제안에 따라 진행되는 신규사업, 사업진행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방법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통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아동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책무성	<p>- 유연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이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이 협약 및 근거법령이 정하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 전	<p>- 아동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위험요인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비상 시 대피로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습니까? 의견을 구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구하였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및 추후 자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예) 자문위원회 개최, 옴부즈퍼슨 운영, 타당성 검토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 문	<p>- 옴부즈퍼슨이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 있다면 각각의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반영한 경우			
	반영하지 않은 경우			
홍 보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업수행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성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어떠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갈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서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점검사항: 영향평가 필요여부와 시기				
- 아동권리 영향진단을 통해 사업수행과정에서 기대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및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평가시기를 서술해 주십시오.				
예 <input type="checkbox"/>	필요한 이유			
	평가시기			

	평가계획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필요하지 않은 이유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예시(Version2. 22 May 2017) 재구성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 및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한 최초의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다. 성북구는 2014년에 아동영향 평가 연구용역(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을 통하여 아동영향 평가를 위한 점검표 및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아동영향 평가의 대상 정책 및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아동영향 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축하였다. 성북구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영향 평가를 도입한 성북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아동영향 평가를 추진하거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양식을 활용하여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박금식, 하정화, 손주영 외, 2017). 성북구의 아동영향 평가 방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영향 평가 방식은 방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칙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제 3절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취약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선별주의적 정책으로부터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적극적·보편주의적 정책으로 발전하여 왔다(류정희, 2016).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및 성인들의 사회적 인식 수준은 아직도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가 우리나라 법제도와 정책에 아직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서영미, 2018), 아동정책의 효과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황옥경, 2016). 그리고 최근의 우리나라 아동 실태 비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은 OECD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외, 2015; 염유식, 김경미, 성영찬 외, 2018).

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아동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으며, 아동정책이 아동의 욕구와 이익에 맞게 수립되고 추진되는지와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점검시스템이 미비하였음을 말해준다(박영균, 조흥식, 장승원, 2014). 이러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아동의 주류화에 기여하고, 아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그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와 이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영향평가는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과 정책,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아동의 권리증진과 이들의 안녕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과 성과를 가지는지 점검하고, 그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박영균, 조흥식, 장승원, 2014).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아동영향 평가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가 최근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2015년에 그동안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아동정책을 통합하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아동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3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정책 영향 평가를 신설하였으며(동법 제11조 2), 준비기간을 두고 2019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서영미, 2018).

아동영향 평가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를 위한 아동 관련 정책영역의 긍정적 변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 크게 아동의 권리 차원과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에 주는 유용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권리 차원이다. 아동은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이지만 모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할 목적으로 아동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아동은 인구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투표권이 없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관심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아동은 부적절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집단이지만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제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주변부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영향 평가 같은 특별한 기제가 필요한 것이다(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송이은, 2017; Corrigan, 2006).

이러한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Hodgkin(1999)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아동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크게 제외되어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여러 부처와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과제는 다른 정책 의제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즉,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가시성이 낮으며 일관성 및 조정 부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은 아직도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정책과 규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의 경우 결과적으로 높은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고, 아동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조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아동영향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아동 관련 정책에 주는 유용성 차원이다. 아동영향 평가는 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과정과 시행 중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간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아동영향 평가는 정보에 입각한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법률, 정책, 정책결정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아동영향 평가는 효과적인 법률 및 전략을 만

들고, 문제나 개선방안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아동영향 평가는 아동과 관련된 법률 및 전략의 개발에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동영향 평가는 기관들이 법적으로 명시된 인권 의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도울 수 있다 (ACT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또한, 아동영향 평가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들에게 아동정책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하게 제공하여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의 갈등 조정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김주일, 김옥진, 김아래미 외, 2016; 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송이은, 2017). 그리고 아동영향 평가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정책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임성을 부과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송이은, 2017). 이러한 아동영향 평가의 유용성은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아동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여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장

국내외 영향평가 고찰

제1절 국내 영향평가

제2절 국내 아동영향평가

제3절 해외 아동영향평가

3

국내외 영향평가 고찰 <<

제 1절 국내 영향 평가

1. 성별영향평가

가. 근거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차별적 정책인 경우 그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근거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¹⁾.”로 성별영향평가의 의미를 명시하며 나아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을 통해 제시한다.

「성별영향평가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와 연계되어 2018년 3월 27일 법령이 수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명칭과 형식이 다른 영향평가와 상이함에 따라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수정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²⁾. 「성별영향평가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8.09.28.] [법률 제 15545호, 2018.03.27., 일부 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25E#undefined>(2018.10.22. 인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평가법” 제정·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910&lsId=&efYd=201809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2018.10.22. 인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상위 법령 기능함을 보인다. 구체적인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관의 관계로 성별영향평가의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서의 작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역할, 평가 후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하위 조항들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3장은 중앙과 지방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자문 및 평가기관과 관련 전문가 육성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추진과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3항³⁾」은 법령 안 심사 규정에서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안 심사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을 첨부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법령안은 차과회의에서 상정이 불가함을 명시한다(여성가족부, 2018).

위와 같이 대표적인 3가지의 근거법령에 기준하여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를 대상 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점검한다.

나. 평가주체 및 대행기관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의 주체는 크게 2가지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분류 가능하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와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직접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분석평가책임관은 소속 실장, 국장으로 분석평가 대상정책의 선정과 분석평가서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반영, 추진 실적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함에 있어 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8.29.] [총리령 제 1486호, 2018.08.29., 일부 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25E#undefined>(2018.10.22. 인출)

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실무담당자의 요건과 역할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으로 실무담당자를 지정해야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위원회 주체가 되어 심사를 수행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이나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운영이 성과별을 완화시키는 데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성별평가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 12월 기준; 여성가족부, 2018)을 지정해 운영한다. 중앙성별평가기관의 주요 업무는 (1)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2)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3)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사업 출괄지원 및 컨설팅트 과리 (4)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5)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주체를 검토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우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이 필요한데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소속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책임관을 지정한다.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대상정책의 선정과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반영, 추진 실적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나아가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함에 있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으로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지자체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위원회가 주

체가 되어 심사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성별평가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별성별평가기관의 주요 업무는 (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2)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평가 대상정책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3)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4)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5)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6)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 평가기관은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16개 지역별 지정기관이 선정, 운영되고 있다.

<표 3-1> 중앙 및 지역별 성별평가기관 현황

지역	구분	기관명	지정기간
서울	중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5. 10 ~ '18. 5. 9
서울	지역	서울여성가족재단	'18. 1. 1 ~ '20. 12. 3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8. 1. 1 ~ '20. 12. 31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5. 6. 25 ~ '18. 6. 24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6. 1. 10 ~ '18. 12. 31
광주		광주여성재단	'16. 9. 5 ~ '18. 12. 31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15. 3. 20 ~ '18. 3. 19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5. 5. 21 ~ '18. 5. 20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5. 5. 10 ~ '18. 5. 9
강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16. 6. 1 ~ '18. 12. 31
충북		충북여성재단	'18. 1. 1 ~ '20. 12. 31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 5. 10 ~ '18. 5. 9
전북		전북연구원	'15. 5. 21 ~ '18. 5. 20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8. 1. 1 ~ '20. 12. 31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8. 1. 15 ~ '20. 12. 31
경남		창원대학교	'15. 3. 20 ~ '18. 3. 19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 1. 1 ~ '20. 12. 31

주: 컨설턴트는 중복 인원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다. 평가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대상은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의 4가지로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일원화된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한 정량 평가로 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사업을 고려하여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전년도 12월까지 선정하며, 지자체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시도교육청별로 성평등 목표와의 관련성과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6월까지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즉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각기 선정하며 구체적으로 법령, 계획, 사업, 정부홍보사업의 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각 평가대상별(법령, 계획, 사업) 평가절차를 확인한다. 법령, 계획,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분석평가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평가 절차는 상이하게 구성되는데, 분석평가 작성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체크리스트로만 분석 후 평가를 종료한다. 하지만 분석평가 작성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서 작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법령의 경우 제·개정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조례, 규칙)이 분석평가의 심사 대상이 된다. 분석평가서의 작성대상이 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를 함께 작성 및 제출한다. 다음으로 계획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에서 분석평가 제외대상은 없이 모두 분석평가서를 작성한다.

〈표 3-2〉 법령과 계획의 분석평가 제외대상 근거

구분	분석평가 제외대상
법령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44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구분	분석평가 제외대상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등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계획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예) 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재구성

정부홍보사업의 경우 법령, 계획, 사업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경로를 통한 정부홍보사업을 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정부홍보사업 분석평가서식을 배포하고,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분석평가를 수행한다.

라. 평가 추진절차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추진되는 성별영향평가와 여성가족부장관의 실시에 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구분되며, 각 평가의 추진 절차를 살펴본다.

우선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절차로 모든 과정을 GIA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 검토의견의 통보, 반영계획 제출, 반영계획 관리, (사업의 경우)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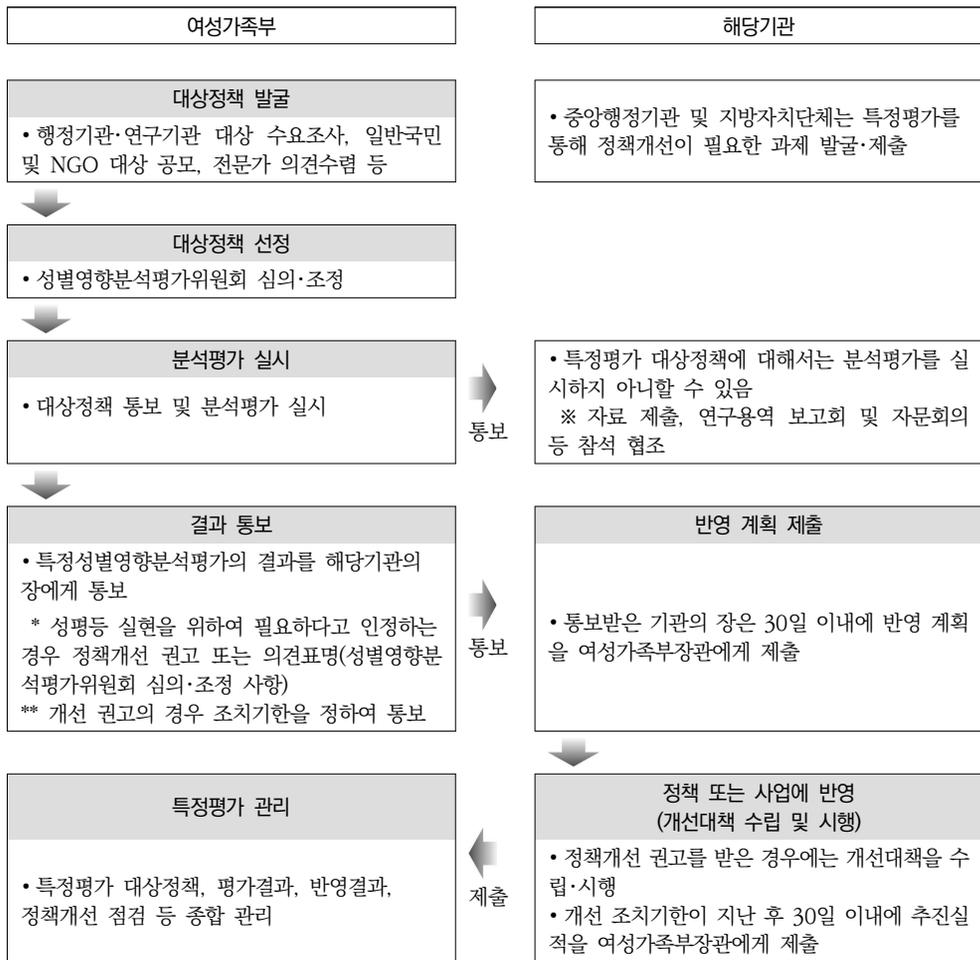
구분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법령·계획의 경우 반영계획 관리 까지 수행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	사업선정 (중앙)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매년 12월) * 단, 사업 선정 시 각 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지자체) 성평등 실행 목표와의 관련성,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18.6월)	해당부서 (→분석평가 책임관)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제출 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설명자료 첨부) * (중앙) '18.2월까지 (지자체) '18.7월까지	해당부서 (→분석평가 책임관)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부처(부서)에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으로 결과를 통보 * (중앙) '18.4월까지 (지자체) '18.8월까지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분석평가책임관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중앙) '18.5월까지 (지자체) '18.9월까지	해당부서 (→분석평가 책임관)
	여성가족부	반영계획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 * (중앙) '18.5~12월 (지자체) '18.9~12월	분석평가책임관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작성까지 수행	해당 부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별평가에 따른 성평등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중앙) '18.5월~(지자체) '18.10월~ *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등	해당부서

자료: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재구성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과제발굴 공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한다.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평가를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구체적인 추진절차로 대상정책의 발굴, 대상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실시, 분석결과 통보, 반영계획 제출 및 반영, 반영계획 관리의 단계를 거친다.

〈표 3-4〉 특정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자료: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재구성

마. 평가 내용 및 방법

성별영향평가의 모든 평가는 일월화된 GIA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GIA는 분석평가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며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크리스트를 통한 절차만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의 경우 체크리스트만 제출 → 체크리스트 검토로 평가절차가 진행되고,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 → 반영계획서 확인 및 관리로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대상별 지표는 각 평가단위에 따라 상이하게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5〉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영역	평가내용
법령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성별 특성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는가?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성별 통계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가?
계획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전략 및 중점과제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사업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예산분배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법령 반영 계획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자료: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재구성

바. 평가결과 환류 방법 및 절차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가 결과 개선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 해당부처 및 부서는 반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또는 지자체는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에의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으로 의견과 이유를 전달한다. 이후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를 작성하며 각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취합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에 제출이 필요하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의 환류를 집행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정책개선의 권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표명할 수 있으며,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반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 의견을 통보한다. 이후 특정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반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에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표 3-6〉 평가대상별 평가지표

영역	평가결과 환류 방법 및 절차
법령·계획·법령	(반영계획 제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반영계획서' 제출 (반영계획 관리)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중단'으로 표시
특정성별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수행 - 정책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자료: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재구성

2. 건강영향평가⁴⁾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방법 또는 그 조합”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환경보건법 제정 후,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내에 위생·공중보건 항목으로 접근하여 건강영향평가가 시작되었다.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한다; (2)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한다; (3)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으로 구성한다; (4)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영향평가는 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 등 다양한 관련자를 참여시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건강영향과 불평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사업의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관들 사이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두며, 건강관련 숨은 비용, 즉 발병후 그 병을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가. 근거법령

건강영향평가는 아래의 환경보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하며, 평가의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표1)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

4)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www.eiass.go.kr)의 정보에 기반하여 요약 정리

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모두 포괄하는 건강영향평가의 정의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기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과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만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시행령 제13조에 건강영향평가 항목의 검토와 관련,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법령에 건강영향평가 대상과 검토 및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표 3-7〉 환경보건법 제13조 1항(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3-8〉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나. 평가내용과 방법

건강영향평가의 평가내용과 방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예규 제474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평가내용은 현황조사와 건강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조사, 그리고 불가피한 건강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현황조사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구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사항목과 조사범위를 정해야 한다. 건강영향 예측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포함한 예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감방안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환경부는 그에 대해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환경조사는 모니터링계획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자가 작성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건강영향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저감대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및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예규를 통해 사업의 시행이 인구집단별(어린이, 노인, 성인여성, 성인 남성)로 미칠 긍정적·부정적 건강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저감대책 계획을 사업의 시행 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표 3-9〉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제3조1항 관련)⁵⁾

내용	항목	방법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인구 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나. 조사범위	
2. 건강영향 예측	가. 예측 항목	○ 예측항목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서 아래와 같다. (생략)

5) 환경부예규 제474호

내용	항목	방법
	나. 예측 범위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예측방법 1) 스코핑 2) 정성적 평가 3) 정량적 평가 가) 대기질(악취)	○ 스코핑 매트릭스(별지 제1호·제2호서식)를 이용하여 설정한 평가 항목, 내용, 방법 등을 서술한다. ○ 사업 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검토하여 긍정적·부정적 건강영향 종류, 정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별지 제3호·제4호서식) ○ 건강결정요인별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별 배출량 산정 - 영향 예상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예측(대기확산모델 이용) - 대기오염물질별 C-R함수를 이용하여 건강영향을 개략적으로 검토 - 국내 역학조사 결과와의 비교 검토 -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 산정 - 발암성 물질의 경우 발암위해도 산정
	나) 수질	-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원수 중 건강영향 추가평가 항목의 현황 농도 확인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예측(수질모델링 등을 이용) - 오염물질별로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위해도 지수를 계산 ※ 정량적 평가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
	다) 소음·진동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소음 예측(소음예측모델을 이용) - 산출된 예측소음도와 소음환경기준을 우선 비교하여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 ※ 정량적 평가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
3. 저감방안		○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 발암성 물질은 발암위해도가 10-6을 초과할 경우,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단, 발암성물질의 경우에 국내·외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이후에도 1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10-5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5. 불가피한 건강영향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대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한다.

다. 평가체계 및 절차

건강영향평가는 단위 사업의 수행전 사업수행자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검토한다. 건강영향평가의 절차는 전 세계적으로 [그림3-1]과 유사하나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대상사업과 규모를 명시하고 있어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하고 있다. 우선, 사업분석 단계에

서는 사업계획, 시행자, 승인기관, 사업목적, 예산 등 일반 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스코핑 단계에서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스코핑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평가 항목, 내용, 방법 등을 서술하는 과정으로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평가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건강영향평가 대상 인구집단 및 취약집단, 공간적·시간적 범위, 부정적·긍정적 영향, 수집 자료, 부정적 영향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다. 이때 사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사업의 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 내용의 잠재적 건강영향을 검토하여 부정적·긍정적 건강영향의 종류, 정도 가능성과, 건강결정요인별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정량적 평가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농도 예측, 대기오염 물질별 C-R 함수를 이용한 건강영향의 대략적 검토, 발암 및 비발암 물질의 위해도 산정 등과 같은 계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서미경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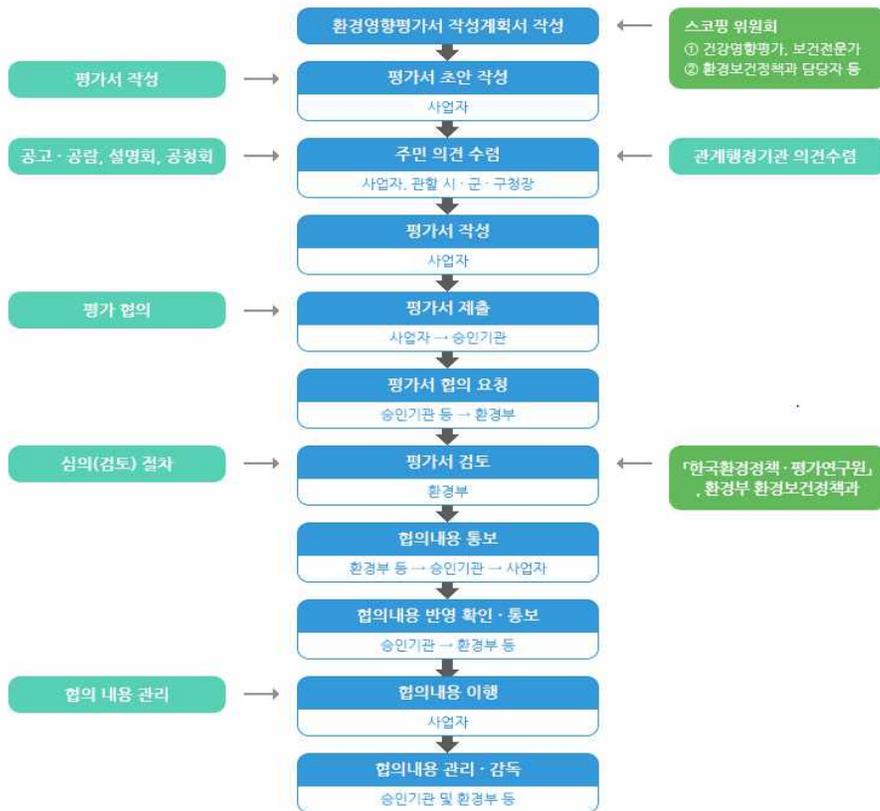
[그림 3-1]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3-2]와 같다. 건강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준용한다. 우선, 스코핑 단계에서 단위 사업의 수행 전 사업수행자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사업자는 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 작성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건강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한다. 평가 단계에서 내용 검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하고,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한다.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

(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통보되면,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해야 하고, 환경부나 승인기관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다.

[그림 3-2]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라. 건강영향평가의 시사점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13조 1항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의 수행과 평가 주체 또한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가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건강영향평가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에 편리성은

있지만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스코핑 위원회와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하여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대상선정을 위한 스크리닝 단계를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하고 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서미경 외, 2008). 법규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폭넓게 선정하여 스크리닝을 통해서 평가대상을 국가가 주도하여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서미경 외, 2008).

건강영향평가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평가를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아동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환경부예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자용 매뉴얼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따르도록하고 있다.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포함한 정량적·정성적 조사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영향평가 수행의 주체와 대상 선정의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의 결과와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정책영향평가의 검토 및 평가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시키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3-10〉 건강영향 특성 요약

항목	근거	내용
평가 근거	환경보건법 13조 1항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수행주체	환경보건법 13조 1항	관계 행정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평가대상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정책, 계획, 프로그램 포함하지 않음; 대상선정을 위한 스크리닝 단계 생략)
평가내용	환경부예규 제474호	건강영향 예측, 저감 방안, 사후환경조사, 불가피한 건강영향
평가방법	환경부예규 제474호	스코핑,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평가	환경보건법 13조 1항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검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3. 고용영향평가

가. 근거 법령 및 목적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06~2009년에 걸쳐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나태준 외, 2014).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 평가 실시하면서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근거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로 해당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 3-11〉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고용영향평가)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 21.></p>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 [제목개정 2014. 1. 2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8.11.20. 인출)

해당 법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래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통해 고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변화를 개선함에 있다. 각각의 정책은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는 해당정책이나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바탕으로 고용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나. 평가 주체 및 평가 대상

고용영향평가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8항 조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대행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이 대상이 되며 현재 대행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3년 이후 대행기관으로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 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해 왔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평가대상은 4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 평가 요청 시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이다. 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고용정책심의회)).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이 해당된다. 넷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과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이다.

〈표 3-12〉 고용영향평가 대상

구분	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과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자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 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고용영향평가는 평가가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대상은 주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가 된다(고용영향평가 센터 홈페이지). 〈표〉는 그간에 실시되어온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수를

나타낸다. 도입초기에는 15개 ~20 사이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오다 2014년 이후 3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고용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수 추이

년도	대상사업 수	년도	대상사업 수
2017	39	2013	17
2016	19	2012	15
2015	33	2011	19
2014	32	2010	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자료 및 윤철경(2013) 내용 재구성

다. 평가 절차 및 방법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방법과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수행기관에서 대상사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만,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해당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일자리의 증감,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 22조의 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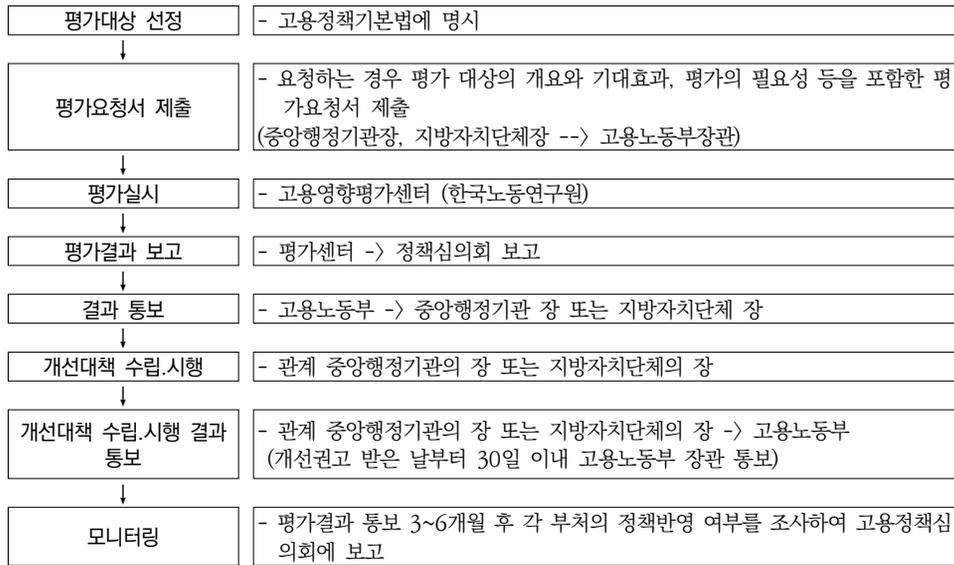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영향평가와 예산고용영향평가와 정책고용영향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 매뉴얼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고용연계성(일자리창출경로) 설정의 주요 내용은 평가 대상이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논리적 경로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수성이나 장애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의 양에 대한 내용은 고용의 양 실태를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의 양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은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고용안정, 성평등, 기타 등등)에 대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의 질 변화를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정책고용영향평가 표

준매뉴얼, 2018).

평가절차는 <표 3-14> 과 같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이 선정이 되며 평가대상 사업부처 또는 자치단체장은 평가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요청서에는 평가 대상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요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결과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되고 각 부처에 통보된다.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책제언 반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이후에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부처 자체점검, 현장 모니터링 실사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고용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 반영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표 3-14> 고용영향평가 추진 체계



자료 : 고용정책기본법 내용 재구성

고용영향평가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전문기관에서 실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의 고용영향평가 체계의 한계로 평가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과제가 소관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선정되는 한계와 사후평가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나태준 외, 2014). 사후평가는 사전평가에 의해서 제도효과를 제고하고 부정적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론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나태준 외, 2014).

4. 문화영향평가⁶⁾

가. 근거 법령 및 목적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15〉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영향평가의 목적은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책형성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영향평가 진단을 바탕으로 문화컨설팅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소개 자료 참조

나. 평가 주체 및 평가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며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의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위와 같은 정책 중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문화체육관광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고용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구축하여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 3조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필요한 경우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16년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문화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3-16>은 그동안 수행된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수를 나타낸다. 도입초기 시범평가로 각각 4건과 5건에 대해서 실시된 이후 본 평가 시에는 1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실시되었다.

〈표 3-16〉 문화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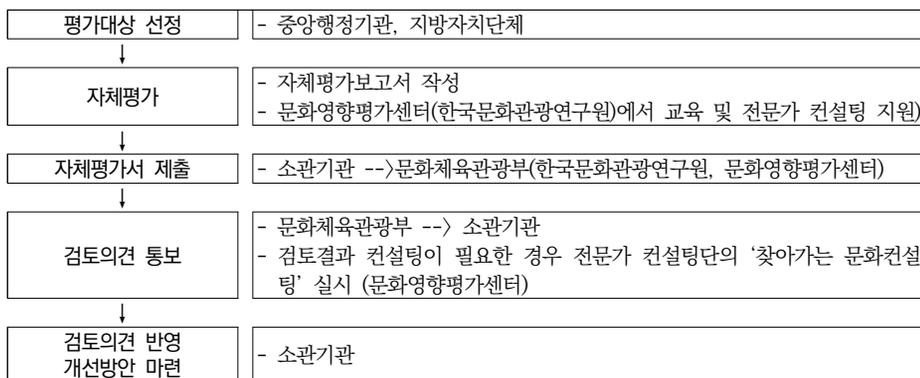
년도	대상사업 수	비고
2017	15	(본평가) 전문평가 14건, 자체평가 1건
2016	15	(본평가) 지자체 정책 14건, 계획 1건
2015	5	(시범 평가) 정책 5건
2014	4	(시범 평가) 정책 4건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성

다. 평가 절차 및 방법

문화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제시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이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 지표 및 방법을 개발한 경우, 자체 지표 및 방법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단의 ‘찾아가는 문화컨설팅’이 이루어진다.

〈표 3-17〉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 자체평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전문평가는 제 3자인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로 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략평가 유형이 있다. 기본평가는 전문적·구체적인 문화컨설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심층평가는 국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이 큰 정책과 계획으로 엄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평가는 문화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항목과 평가 지표는 <표 3-18>과 같다. 전문평가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반면 자체평가의 경우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문화발전에 대한 평가는 자율선택사항이다.

<표 3-18> 문화영향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할 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책이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문화정체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반목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여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의 상품화나 획일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피어나게 함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모이도록 하며, 융합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함
특성화지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제도 홍보물

전문 문화영향평가 절차는 <표 3-19>와 같다. 수요조사와 문화영향평가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요청서를 제출하고 평가대상별로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문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전문 평가단을 중심으로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를 전달하고 필요시 관련전문가의 문화컨설팅을 제공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표 3-19〉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평가대상 제안 및 요청	- 중앙부처/지자체/국민/전문가 등 제안
↓	
평가대상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	
평가요청서 제출	- 요청하는 경우 평가 대상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등을 포함한 평가요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개별평가	-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 진행 -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 수행
↓	
종합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센터) -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 검토
↓	
평가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 평가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단의 찾아가는 문화 컨설팅 실시 (문화영향평가 센터)
↓	
정책개선방안 마련	- 중앙부처, 지자체
↓	
반영결과 보고	- 중앙부처,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제도 홍보물

문화영향평가는 고용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해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중심의 평가사 수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의무반영 조항이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체평가유형이 있으며 자체 평가에 대한 검토를 문화영향평가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전문평가는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문화컨설팅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제 2절 국내 아동영향 평가

1. 영향평가 체계

가.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성북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아동영향평가를 설계하고 수행한 첫 번째 지역으로,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의미가 크다. 성북구는 2015년 7대 전략과제인 「아동친화 교육도시 정착」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2014년 5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조례 이 외 “아동복지법 제11조 2”의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제12조”를 추진근거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성북구청, 2015a). 성북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1)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확산 (2)정책의 수요자인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리 보장 (2)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개선함으로써 아동정책 효과성 및 유효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아동 권리 증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성북구청, 2018).

평가영역은 갈등사항(아동·청소년 관련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 여부, 타 법규·조례와의 관계), 권리보장(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 여부), 차별요인(특정 유형의 아동에 대한 배제 및 차별 여부), 의견수렴(당사자의 의견 수렴, 아동 대상 홍보 등 참여 증진 노력 여부)이다(성북구청, 2018). 성북구의 평가영역은 4대 아동청소년 권리인 생존권(생활수준, 주거환경, 건강), 보호권(학대와 방임, 사회적 보호, 비행 및 위험 행동, 청소년의 경제 활동), 발달권(교육, 보육(양육) 서비스, 문화와 여가, 가족환경, 지역환경, 사회적관계, 사회생활과 참여), 참여권(권리 이해, 권리행사, 정보획득)에 기초하여 발전했다(조흥식 외, 2014).

성북구 아동영향평가의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 방법, 평가시기의 경우 사전·사후·심층으로 분리되는 평가시기에 맞추어 평가 대상, 주체, 방법이 상이하게 설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에 평가시기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평가 대상, 주체, 방법,

시기의 분석에 있어 3단계(사전, 사후, 심층)에 맞추어 각 단계별 특성을 살펴본다. 아동영향분석평가의 출발은 업무소관부서의 사전평가로, 1단계인 사전평가에서 이후의 사전 심층평거나 사후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종결한다. 하지만 사전평가 단계에서 심층적인 평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 심층평가를 수행한다. 사전평가 혹은 심층평가에서 사후 평가의 필요성이 결정되면 1차 사후 평가를 수행하고 이후의 심층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종결한다. 하지만 사후평가 단계에서 심층적인 평가(전문가 심층 심의 및 모니터링, fgi)가 필요할 경우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한다. 종합적으로 아동영향평가는 짧게는 1단계로(사전평가) 길게는 4단계로(사전평가-사전심층평가-사후평가-사후심층평가)로 수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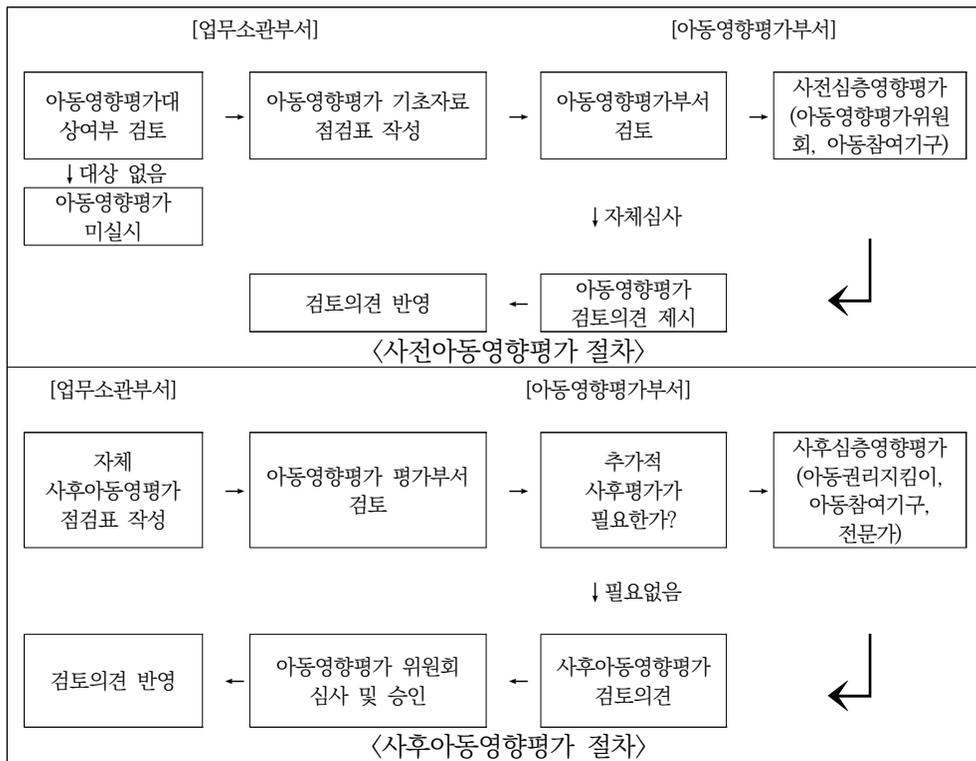
사전평가의 평가대상은 조례, 규칙, 계획, 사업으로 증장기 계획과 개괄적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부표 2 ~ 부표 6 참조]. 사후 평가의 평가대상은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사업 중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한 세출예산 단위사업과 계획 및 사업이다(성북구청, 2018).

사전 영향평가 대상 선정의 평가주체는 업무 소관부서로 점검표 작성을 통한 내부 평가를 수행한다. 소관부서의 자가진단을 통해 평가 대상으로 해당이 되면 평가 실행 단계로 아동영향평가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사전평가 이후 업무소관부서는 아동영향평가부서의 검토의견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영역으로 아동영향평가위원회와 아동참여기구가 주체가 되어 평가를 수행한다. 사후 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의 선정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사후평가자료 및 사후평가점검도를 통한 내부 평가로 수행된다. 소관부서의 내부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으로 해당이 되면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주체로 심사와 승인이 수행된다. 사후평가 이후 업무소관부서는 아동영향평가부서의 검토의견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아동참여기구, 아동모니터링단, 아동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집단,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중 해당 이슈에 적합한 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심층평가의 종합적인 결과는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주체로 심사, 승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업무소관부서가 주체가 되어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사전 평가의 평가방법은 정량평가로 평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도출된 7가지 항목

으로 (1)아동의 제반권리와의 관계 (2)무차별 (3)아동 최선의 이익 (4)당사자의 의견 수렴 (5)홍보 (6)타 법규, 조려와의 관계 (7)사후평가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사전 심층평가의 경우 전문가 혹은 이해당사자(아동)의 판단이 요구됨에 따라 심의 혹은 자문의 형태로 평가를 수행한다. 사후 평가의 1차 점검은 사전평가와 동일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수행한다. 사후 평가 이후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다양한 평가방법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에 전문가 심층 자문, 모니터링단에 의한 평가, 아동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fgi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3] 성북구 아동영향분석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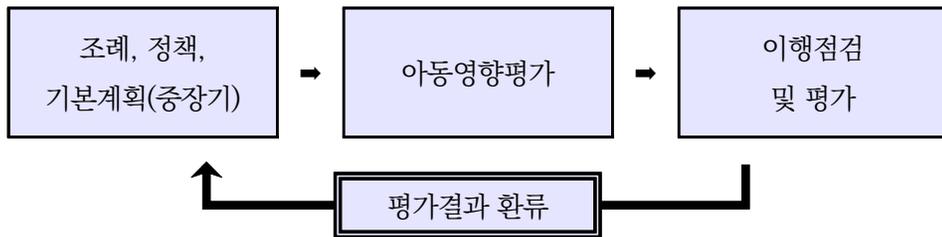


자료: 성북구청(2018)

나.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서울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서울」의 기본계획 안에서 아동영향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법령 근거로 2017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7.01.05. 제정)」의 제 10조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⁷⁾ 이에 의거해 아동영향평가의 시행이 요구된다. 즉 서울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하나로 제도의 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3-4] 아동영향분석평가의 제도 틀



자료: 서울특별시(2018)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는 현재 수립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아동영향평가에 의거한 기본계획의 시행 및 효과 평가는 2022년부터 수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련 지표의 경우 송이은(2017)의 연구로 수행되어 관련 내용을 활용해 서울시 아동영향평가를 검토한다. 다만,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2018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서울시 아동영향평가는 다소 다른 평가체계를 가질 수 있다.

평가 영역은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의 6대 영역으로 각 영역별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조례, 계획, 사업(단위·세부)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각 영역별 평가대상은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례, 계획, 사업이 있는 반면 간

7)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2018.10.01 인출)

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례, 계획, 사업이 있다. 송이은(2017)은 직접대상사업의 경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아동청소년 집단 내 형평성 확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아동청소년 간접사업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상하여 평가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평가대상이 사업단위의 분석으로 귀결되기 쉽지만 거시적인 차원의 법·조례, 계획은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명시한다.

송이은(2017)은 평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 평가 영역별로 아동과의 관련성(직접/ 간접 여부)과 구체적인 사업 명에 따라 아동의 일반적인 권리(참여 및 존중) 및 특수 욕구가 잘 반영된 사업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으로서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나아가 각 사업별 주요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그림 3-5] 아동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야	대상	관련성	대상명	일반 권리/복지		특수	주요 지표
				참여	존중	요구도 형평성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법 조례	간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X	○ X	○ X	아동 참여 비율
		직접	아동복지 지원 조례	○ X	○ X	○ X	아동 의견 반영 비율
	계획	간접	시민건강국 사업계획	○ X	○ X	○ X	건강 시설 이용 가능 아동 비율
		직접	아동건강관리 사업계획	○ X	○ X	○ X	특수 집단 아동 수혜율
	사업	간접	건강도시 환경조성	○ X	○ X	○ X	전체 영향 집단 중 아동 비율
		직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X	○ X	○ X	학교밖 아동 비율 (학교 상담 등의 기회에서 소외 가능성 고려)

자료: 송이은(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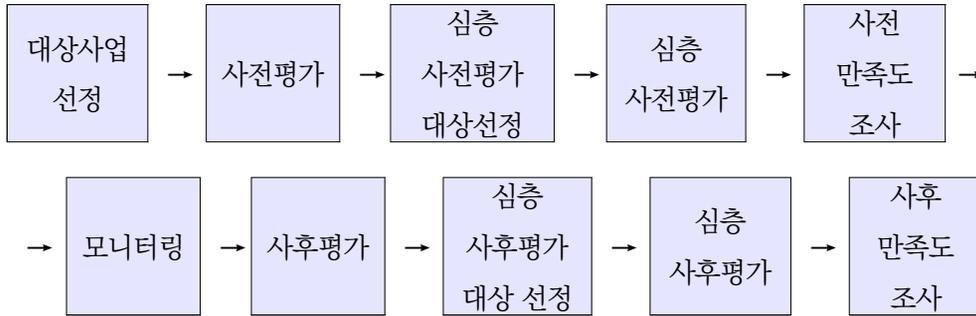
평가주체의 경우 정책분석을 수행할 대상(사업) 선정, 평가의 수행, 결과의 검토 단계에 따라 상이한 평가 주체가 선정되는데 대상선정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영향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포괄한 평가의 수행은 사업부서와 전문가,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종합적인 참여, 평가결과의 검토는 총괄부서와 전문가 집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형태임을 제시한다.

평가방법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장단점이 구분되기에 서울시 평가방법 개

발에 있어서도 정량과 정성평가의 혼용이 필요함을 제시한다(송이은, 2017). 정량평가의 경우 분석 전반의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큰 강점이 있는 반면, 정성평가는 집단 내 취약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Krieger and Ribar, 2009; 송이은, 2017 재인용).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법·조례 단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량평가를, 세부 단위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성평가가 더 적절함을 언급하며 영향분석 평가의 전반에 걸쳐 분석방법의 혼용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나아가 만족도조사의 경우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만족도 조사의 형태는 정량과 정성 평가 중 구체적인 형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1) 아동영향평가가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적정성 여부와 (2) 아동영향평가가 변화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의 대응성 여부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으로 제시한다. 종합적으로 송이은(2017)은 이러한 내용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량과 정성지표를 모두 활용한 지표(안)을 제시하며, 아동영향분석평가의 구체적인 판단지표는 평가분야(참여/존중)별, 아동과의 관련성 여부(직접/간접)별, 평가방법(정량/정성)별로 상이하게 구성한다[부표 1 참조]. 정량, 정성, 만족도 평가방법의 경우 평가시기와 맞물려 시스템 측면의 고민이 드러나는데 아래에서 살펴볼 평가 시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검토한다.

평가 시기는 크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이루어지나 각 평가방법과 맞물려 전체 평가 프로세스는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사전/ 사후/ 심층 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1)아동영향평가 대상선정과 (2)만족도 조사이다.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은 아동영향분석평가의 핵심 작업인 만큼 사전/사후/심층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 사전평가, 심층 사전평가, 사후평가, 심층 사후평가의 4단계로 평가가 수행된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사전/ 사후 만족도 조사가 수행되며 사전과 사후 만족도 조사 사이에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평가 영역별 사전/사후/심층 평가를 모두 고려한 평가 프로세스는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다.

[그림 3-6] 서울시 아동영향분석평가 절차



자료: 송이은(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2. 영향평가 결과

가. 종로구 아동 영향평가

종로구의 경우 강동구에서 사용하는 영향평가양식에 기반하여 2016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강동구에서 사용하는 영향평가양식 또한 성북구에서 최초로 개발된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부록].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조례 및 규칙(1개), 계획(3개), 사업(42개)을 포함하여 총 46개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표 3-20> 종로구 아동영향평가의 범위

구분	권리	조례 및 규칙, 계획명	담당부서
조례 및 규칙	전체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생존권	어린이 기호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일자리경제과
	보호권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	건강증진과
	발달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과
사업	생존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증진과
		아동청소년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건강증진과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건강증진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건강증진과
		송인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공사	공원녹지과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원녹지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교통행정과		

구분	권리	조례 및 규칙, 계획명	담당부서
		어린이 보호구역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행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보건위생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부암어린이집 건립 계획	여성가족과
		송인2동어린이집 건립 계획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과
	보호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	교육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	여성가족과
		아동급식	여성가족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성가족과
	발달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어린이 축구교실	관광체육과
		종로아이들극장 운영	관광체육과
		청소년 풋살교실	관광체육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우선지구형) 사업	교육지원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및 영어캠프 운영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과
		창신겨점영어센터운영	교육지원과
		아시테지 겨울 / 여름 축제	문화과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문화과
		찾아가서 알려주는 식품안전 영양교육	보건위생과
		효사랑실천사업(효백일장, 효예절교육)	복지지원과
		동요축제	여성가족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여성가족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사업	여성가족과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	여성가족과
		찾아가서 알려주는 에너지 절약 순회교육	환경과
참여권	2016년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계획	감사담당관	

자료: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2016). p.60~61.

각각의 사업이 아동권리의 어떤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있는지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구분한 결과 조례 및 규칙과 같이 4대권리가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생존권에 해당되는 경우 21개, 발달권에 해당되는 경우 17개, 보호권에 해당되는 경우 6개, 참여권에 해당되는 경우 1개로 나타났다. 평가시점은 시행전인 경우가 6.5%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시행중(65.2%)이거나 시행 후(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리영역별로 구분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영향평가표에 제시된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4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표 3-21〉 종로구 아동영향 평가 결과

		구분	소계 빈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전체
1. 갈등	UN 아동 권리협약 과의 갈 등우려	예	-	-	-	-	-	-
		아니오	35(76.1)	15(71.4)	5(83.3)	13(76.5)	1(100)	1(100)
		해당없음	11(23.9)	6(28.6)	1(16.7)	4(23.5)	-	-
		무응답	-	-	-	-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아동관련 법규와의 갈등우려	예	-	-	-	-	-	-
		아니오	35(76.1)	15(71.4)	5(83.3)	13(76.5)	1(100)	1(100)
		해당없음	11(23.9)	6(28.6)	1(16.7)	4(23.5)	-	-
		무응답	-	-	-	-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기타 법 규 치 타 조례와의 갈등우려	예	-	-	-	-	-	-
		아니오	35(76.1)	15(71.4)	5(83.3)	13(76.5)	1(100)	1(100)
해당없음		11(23.9)	6(28.6)	1(16.7)	4(23.5)	-	-	
무응답		-	-	-	-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2. 아동 권리	생 존 권 고려	예	31(67.4)	21(100)	5(83.3)	4(23.5)	-	1(100)
		아니오	-	-	-	-	-	-
		해당없음	13(28.3)	-	1(16.7)	11(64.7)	1(100)	-
		무응답	2(4.3)	-	-	2(11.8)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보 호 권 고려	예	20(43.5)	10(47.6)	5(83.3)	4(23.5)	-	1(100)
		아니오	1(2.2)	1(4.8)	-	-	-	-
		해당없음	20(43.5)	7(33.3)	1(16.7)	11(64.7)	1(100)	-
		무응답	5(10.9)	3(14.3)	-	2(11.8)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발 달 권 고려	예	32(69.6)	11(52.4)	4(66.7)	16(94.1)	-	1(100)
		아니오	2(4.3)	2(9.5)	-	-	-	-
		해당없음	8(17.4)	4(19)	2(33.3)	1(5.9)	1(100)	-
		무응답	4(8.7)	4(19)	-	-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참 여 권 고려	예	15(32.6)	4(19)	2(33.3)	7(41.2)	1(100)	1(100)
아니오		4(8.7)	4(19)	-	-	-	-	
해당없음		21(45.7)	9(42.9)	4(66.7)	8(47.1)	-	-	
무응답		6(13)	4(19)	-	2(11.8)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3. 무차	무차별의	예	1(2.2)	-	1(16.7)	-	-	-

		구분	소계 빈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전체
별의 원칙	원칙 고려	아니오	43(93.5)	20(95.2)	5(83.3)	16(94.1)	1(100)	1(100)
		해당없음	2(4.3)	1(4.8)	-	1(5.9)	-	-
		무응답	-	-	-	-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4.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예	43(93.5)	19(90.5)	6(100)	17(100)	-	1(100)
		아니오	-	-	-	-	-	-
		해당없음	13(28.3)	-	1(16.7)	11(64.7)	1(100)	-
		무응답	-	-	-	-	-	-
5. 의견 수렴	아동의 의견 수렴	예	23(50)	11(52.4)	3(50)	8(47.1)	1(100)	-
		아니오	8(17.4)	1(4.8)	1(16.7)	6(35.3)	-	-
		해당없음	15(32.6)	9(42.9)	2(33.3)	3(17.6)	-	1(100)
		무응답	-	-	-	-	-	-
6. 홍보	아동 및 이해당사자 대상의 홍보	예	35(76.1)	15(71.4)	4(66.7)	14(82.4)	1(100)	1(100)
		아니오	3(6.5)	3(14.3)	-	-	-	-
		해당없음	8(17.4)	3(14.3)	2(33.3)	3(17.6)	-	-
		무응답	-	-	-	-	-	-
7. 사후 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예	16(34.8)	6(28.6)	2(33.3)	8(47.1)	-	-
		아니오	16(34.8)	9(42.9)	1(16.7)	5(29.4)	1(100)	-
		해당없음	14(30.4)	6(28.6)	3(50)	4(23.5)	-	1(100)
		무응답	-	-	-	-	-	-
8. 아동 권리 증진	아동 권리 증진 효과	높음	35(76.1)	19(90.5)	4(66.7)	10(58.8)	1(100)	1(100)
		보통	11(23.9)	2(9.5)	2(33.3)	7(41.2)	-	-
		낮음	-	-	-	-	-	-
		해당없음	-	-	-	-	-	-
		무응답	-	-	-	-	-	-
		전체	46(100)	21(100)	6(100)	17(100)	1(100)	1(100)

자료: 종로구청(2016)

8개 영역에 대한 모든 평가대상사업이 대부분이 UN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법규, 기타 법규 및 타조례와 갈등이 없고,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생존권을 고려하고, 아동최선의이익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4대기본권리영역 중 보호권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된 사업은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발

달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 사례는 2건으로 아동 또는 가족을 위한 보호환경 구성 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참여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 사례는 4건으로 아동 또는 가족을 위한 보호환경 구성 관련사업, 아동 관련 시설 건립, 아동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영역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참여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차별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아동급식 사업이 해당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발달권과 관련된 사업영역에서 아동의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사업들은 아동대상의 교육과 지역 축제사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및 이해당사자 대상의 홍보(계획)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 보건의료 관련 사업등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의 34.8%는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사업은 아동권리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애초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립·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크게 아동권리에 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참여권, 홍보등은 다소 누락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 시사점

국내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 평가양식이나 평가절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별로 별도의 영향평가표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에 타 자치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표와 평가체계를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성북구의 경우 국내 아동영향평가를 최초로 실시한 자치구로 타 자치구의 아동영향평가체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성북구 이후에 강동구, 종로구 등에서 성북구의 영향평가표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공통

적으로 (1) 타법규와의 갈등, (2)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3) 무차별의 원칙, (4)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5)의견수렴, (6) 홍보, (7) 사후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 영역을 기반으로 평가표를 구성하여 시행중이다. 해당 평가지표는 모두 정성지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정성평가 영역과 정량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위에 제시된 영역 중 (1) 타법규와의 갈등, (7) 사후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외한 5개 영역과 추가로 아동권리 증진 효과, 권리침해 우려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추가로 (1) 건강, (2) 안전, (3) 여가, (4) 역량, (5) 보호, (6) 돌봄 영역에 대해서는 예상 수혜율, 참가율 등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의 평가 영역이 더 많고 세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량평가영역이 더 구체화된 영역이기는 하나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성평가 영역의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정량평가 영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6개의 영역은 아동친화도인증을 위한 기본 영역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 서울시의 모형은 제안단계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모형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와 같은 세부평가지표의 경우,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해당 지표의 구체성으로 인해 평가수행이 좀 더 구체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보인다.

평가절차의 경우 검토된 모든 사례에서 사전(심층사전), 사후(심층사후)평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초기평가표 작성은 사업담당부서에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담당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심층평가를 요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활용한 논의가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대상으로는 법, 조례, 계획, 사업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평가대상 선정방법은 차이가 있다. 성북구의 경우 소관부처와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반면 서울시 모델은 전문위원이 대상을 선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관부처와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된 종로구의 아동영향평가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자체대상선정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아동영향평가 도입시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대상사업 선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성북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북구의 경우 기본 서식을 바탕으로하는 정성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평가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시 모

델은 예상되는 수혜율 및 참가율 등을 활용한 정량평가와 기본 서식과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가 혼용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수행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전평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적으로 정량지표를 활용한 평가 보다는 아동의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계획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수혜율이나 참가율은 사업과 예산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로 사후에 해당 정책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3-22〉 성북구와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 체계

지자체	평가영역	평가대상	평가 주체			평가 방법	평가시기
			대상선정	실행	검토		
서울시	참여, 존중,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법·조례, 계획, 사업	전문위원회	사업부서 전문가 아동·이해당사자	전문가집단, 총괄부서	정량 정성 만족도조사	사전/사후/심층평가
성북구	갈등사항, 권리보장, 차별요인, 의견수렴	조례·규칙, 계획, 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부서(교육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영향평가 부서 (사 후 평 가 의 경우 아동영향 평가위원회 심 사 및 심의)	정량	사전/사후
				아동영향평가 위원회, 아동참여기구(사안이 중 대하거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 및 자문 (사후평가의 경우 전 문가 심층심의, 모니터링, fgi)	심층 평가

자료: (1)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8).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송이은(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활용함
(2)성북구의 경우 “성북구청 내부자료(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을 활용함

제 3절 해외 아동영향 평가

1. 스웨덴 아동영향 평가⁸⁾

스웨덴의 아동영향평가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최선의 이익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해된다.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각 지역의 의사결정자들은 아동의 관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스웨덴의 아동영향평가는 UN의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최선의 이익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동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회는 1999년 「아동권리 협약 이행 전략(A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Sweden)」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동 권리 협약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정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전략의 목적은 정부기관과 국가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사회의 전 계층에 도입되고 보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전략의 하나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모든 결정은 아동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관점은 정부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에 관한 통계 개발과 도시 및 교통 계획에 아동 및 청소년의 영향과 참여가 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아동의 권리협약에 대한 스웨덴의 전략은 아동의 관점을 모든 공공 의사 결정에서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사 결정은 예산 결정, 입법 및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정부기관, 국가 당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 협의회 등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에 관계없이 아동권리협약 자체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책임을 진다.

8) Sylwander.L (2001) Child Impact Assessments. M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for Foreign Affairs,Sweden.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함

가. 옴브즈만과 NGO

스웨덴 아동 옴브즈만(The Swedish Children's Ombusman)은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지지와 지원을 보내고, 모범사례를 제공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착수된 업무를 기술하고 평가·분석 하는 일 등을 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옴브즈만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비판과 장려의 입장을 모두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논쟁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훈련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 범위에서 아동권리협약에 구체적인 효과를 부여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어린이 옴브즈만 사무실(the Office of the Children's Ombudsman)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공적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과 지방의회 सद員들로 구성된 특별한 실무진을 구성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부처들이 다양했기에 어린이 옴브즈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부처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특별한 실무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NGO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로비 등의 활동을 통해서 NGO가 급격히 성장하는 등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연대하였다.

나. 아동영향평가의 고려 요소

아동 옴브즈만의 활동을 바탕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항목들은 평가대상의 특성이나 대상 그룹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영향평가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독단적이고 피상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이보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이 조직 안에서 보다 장기적인 발전과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인식해야 한다. 아동영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5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이나 계획에 이 어떤 아동 또는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가이다. 다시 말해 해당 정책이 개별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적인 아동에게 또

는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개별아동에게는 이익이나 아동 전반에게는 그렇지 아닐 경우 등, 대상과 수준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 달리 정의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그룹에게는 최선의 이익을 초래하지만 다른 그룹에게는 그렇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평가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들 중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나 계획이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전에 아동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결정은 해당 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의사결정 전에 조직 내에서 해당 결정이나 계획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되면 아동영향평가는 수행되지 않으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영향이 광범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아동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명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동영향평가는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세 번째, 아동영향평가는 어떤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는가이다. 아동영향평가를 대상에 따라서 정도와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표3-23)). 영향을 예측하기 쉽고 측정하기도 쉽다면 기존 정보와 관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수준의 평가를 impact appraisals 이라고 한다. 다음은 애초에 아동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책들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최종성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결국 부정적인 성과를 줄일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평가를 impact evaluation 이라고 한다. impact evaluation은 아동의 관점에서 당초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폐쇄, 예산절감, 조직대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이슈다. 이와 같은 경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확고한 지식과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할 것

이다. 이러한 수준의 영향평가를 impact analysis 라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가능한 정보의 검토, 필요에 따라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들의 경험·기대·의견에 대한 조사,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며 impact appraisal 의 경우보다 시간과 자원이 많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나 사회의 각기 다른 영역간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impact review를 할 수 있다.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심층분석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 아동의 특수한 측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아동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득력있는 요약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이전 분석자료 및 유사한 제안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Impact analysis 의 전문가 패널과 제안서 검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결국 어떤 유형의 평가를 수행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적합한 아동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영향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제나 지침은 불필요하며 모든 유형의 영향평가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표 3-23〉 영향평가의 주요 정의

구분	내용
Impact Appraisals	영향을 예측하기 쉽고 측정하기도 쉬운 경우 기존 정보와 관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Impact Evaluation	애초에 아동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책들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최종성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성과를 줄일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
Impact Analysis	심층적인 분석으로, 가능한 정보의 검토, 필요에 따라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들의 경험·기대·의견에 대한 조사,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며 impact appraisal 의 경우보다 시간과 자원이 많이 요구됨
Impact Review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심층분석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 아동의 특수한 측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아동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득력있는 요약 평가를 목적으로 함. 주로 이전 분석자료 및 유사한 제안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짐. Impact analysis 의 전문가 패널과 제안서 검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됨

자료: Sylwander(2001). p 21~22 내용 재구성

네 번째는 어떤 결과(consequences)를 분석할 것인가이다. 영향평가는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판단해야 하며 그 영향이 현재의 것인지 미래에 야기되는 것인지도 판단해야하며, 아동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결과를 분석할지 결정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잠재적 결과(영향)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하다. 어떤 영향이나 결과는 각각의 효과가 다시 새로운 영향을 수반하는 과정이나 사건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계된 효과는 아동에게 의미 있는 것들로 제한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근접한 단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가능한 영향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인과 효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이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과 영향 분석의 단점들은 평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인지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영향평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뼈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다. 이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면밀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자가 자신만의 해석을 사용할 위험과 아동의 평등권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유연한 해석은 개별 아동 및 그들의 의견에 더 많은 여지를 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개념은 단지 아동영향평가의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제안과 이슈, 특정한 아동이나 그룹의 상황들과 연계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듬어 지고 이후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확고해진다. 따라서 아동 또는 집단의 최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영향평가는 모든 의사결정에 선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평가가 필요하다.

다. 아동영향평가 모형

2000년 가을에 아동 옴부즈만(the Children's Ombudsman)은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아동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와 NGO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제시된 모형은 다른 종류의 활동(사업, 정책 등)과 중앙, 지자체, 자치구 등 모든 사회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제시된 모형은 영향평가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그에 따라 고려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책임과 역할, 주요 관심사와 이슈에 따라 응용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 틀은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1) 아동권리협약에서 제공한 지침

UN아동권리협약 제 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이 내포하는 다양한 권리의 기본 윤리로 여겨지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이와 함께 제 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제 3조의 아동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침에 해당한다.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아동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견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자신의 의견 제시가 허용되고 제시된 의견이 의사결정에 포함될 때 아동최선의 이익이 실제로 분명해 지며, 1차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아동영향평가의 기본지침이 되는 조항은 제 2조(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와 제 6조(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의 무차별의 원칙과 생존과 발달권이 해당된다. 이밖에 아동의 요구와 이익에 관련된 여러 권리조항들도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권리 협약은 교육, 여가, 취약아동과 같은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해 아동최선의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제공한다.

(2) 지침, 규제, 법령문서에 제시된 전제조건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경우의 전문성은 아동의 권리 또는 이익이 관련된 국내법, 지침, 규정에 관한 기본지식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적 법률은 아동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보살핌과 접촉기회, 범죄와 처벌,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참여와 영향을 언급하는 법을 의미할 수 있다.

(3) 연구, 조사, 검토에 의한 과학적 근거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아동의 요구, 개발,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환경과 건강관련 위해분석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학교,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기타 조직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이익을 입증해야하는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최신 연구, 조사, 검토내용이 수집되어야 한다. 모든 전제조건들이 알려지거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상되지 못한 새로운 사건과 요소들은 개발되는 과정에서 추가된다.

(4) 활동에 대한 권한에 따라 주어지는 진행과정

아동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항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질문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앞서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의 형식은 주어진 상황과 활동에 대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응용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각의 활동에 대해 정의된 통상적 서류절차와 과정에 따라야 한다. 영향평가는 간단해야하며, 그림과 도표로 잘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요약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필수 항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편집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영향평가의 진행과정은 자료수집, 기술, 분석, 테스트,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자료수집단계에서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조사가 이루어진다. 충분한 기초정보가 제공되는지 의사결정 전에 추가 계획, 통계,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이슈에 대한 아동 의견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

두 번째 기술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슈는 제안서, 예산, 정책 결정에 대한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과의 관계 측면에서 관련분야의 규정들을 기술해야 하며,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어린이나 그룹은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은 누구인지 영향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아동의 성별, 연령, 발달단계, 가정환경, 돌봄이나 학교, 여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와 관련하여 해당 주제를 조명하는 것은 때로는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관점도 함께 기술되어야 하며, 지출이 어떤 집단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비용의 근거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제안에 대한 근거와 그로인한 결과에 대한 면밀한 문제 분석이 수행되며, 모든 제안서는 그로인한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앞서야 한다. 어떤 요인, 문제점, 필요에 의해 해당 제안이 촉발되었는지,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된 관점의 결과로 제안서의 전제가 변했는지 분석한다. 물론 분석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동권리협약 협약관점에서 어떤 관계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네 번째 테스트 단계는 아동영향평가의 핵심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수행된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완전하고 전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는 아동의 보호, 돌봄, 놀 권리, 여가 등 신체적·정신적 웰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가능한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아동최선의 이익은 개별 아동 또는 그룹에 실현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평가단계이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얼마나 영향분석 결과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래 의도한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Impact Evaluation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한 효과의 달성여부와 추가적인 측정에 대한 필요여부 검토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참여 기회가 주어져 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험을 축적하고 더 적절하고 정확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표 3-24〉 영향평가 수행의 단계

구분	내용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조사 추가 계획, 통계, 연구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이슈에 대한 아동 의견 자료 수집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을 준비하는 과정 제안서, 예산, 정책 결정에 대한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검토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관련분야의 규정들을 기술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어린이나 그룹은 누구인지 명시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영향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대한 사항 명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에 대한 근거와 그로인한 결과에 대한 면밀한 문제 분석 제안서가 촉발된 요인, 목적과 목표 분석 아동권리협약 협약관점에서 분석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선 단계에서 수행된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완전하고 전체적인 평가 수행 아동최선의이익은 개별 아동 또는 그룹에 실현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해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한 효과의 달성여부(Impact Evaluation)와 추가적인 측정에 대한 필요여부 검토를 위한 평가 해당 사업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참여

자료:Sylwander (2001). p 28~33 내용 재구성

앞서 논의된 4가지 구성요소(지침, 전제조건, 과학적 근거, 진행과정)에 의해서 아동 영향평가의 체계가 구축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현재의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표 3-25〉 아동영향평가 점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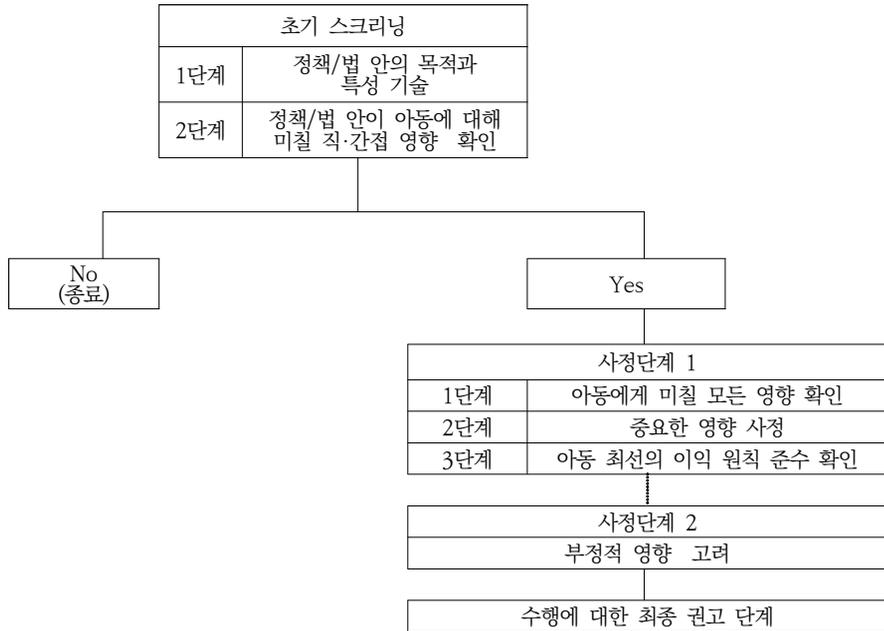
구분	내용
1	현재 제안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무엇인가?
2	현재 제안이 아동권리 협약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3	현재 제안이 초래할 수 있는 특정의 문제나 갈등은 무엇인가?
4	현재 제안이 다른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가?
5	현재 제안이 아동의 관점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가?
6	현재 제안에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가?
7	현재 제안이 사회, 개인,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은 무엇인가?
8	관련성이 있는 다른 쟁점들이 있는가?

자료: Sylwander (2001). p 26

2. 호주

서부 호주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원에 관한 법률(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6)은 위원으로 하여금 법과 정책, 결정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18세 이하의 아동이 적절한 양육과 보살핌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위해나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아동이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부모 및 가족과 지역사회가 아동의 행복(wellbeing), 즉 보살핌, 발달, 교육, 건강과 안전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고려하여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감독한다. 아동·청소년 위원은 법안 작성 시, 담당자를 불러 의견을 묻거나 의회에 소개된 법안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관해서는 정부 기관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권고 사항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관들로 하여금 법안과 정책 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지침을 고안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상정 혹은 개정 전, 정책의 수정 혹은 정책안의 개발 초기에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 지방 정부, 비정부 기구, 학교나 아동돌봄시설, 그리고 청소년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그림 3-7] 서부 호주 아동영향평가 단계



주: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호주의 아동·청소년 위원(2013)이 제시한 아동영향평가의 과정은 [그림 3-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초기 스크리닝(initial screening) 과정은 심도 있는 사정 단계를 거치기 전, 새로운 법이나 정책 안이 아동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스크리닝의 1단계는 제안된 법이나 정책의 목적과 특성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아동에게 미칠 전반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며, 2단계에서는 제안된 법이나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영향력이 없거나 혹은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심도 있는 영향평가를 위해 사정(assessment stage)을 수행한다.

사정단계는 아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와 특정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사정단계1에서는 관련 최근의 관련 연구나 조사, 증거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미칠 모든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우선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아동을 옹호할 수 있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제안된 법이나 정책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집단의 아동(예: 교외지역 아동, 빈곤 혹은 장애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기, 중기, 혹은 장기적인지, 더 나아가 그러한 영향의 정도가 큰지 작은지를 사정한다. 호주의 아동·청소년 위원(2013)은 영향력의 기준을 [표2-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정단계의 마지막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다양한 권리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측정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표 3-26〉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

기준	소(minor)	중(moderate)	대(major)
아동의 수	거의 없음	하나 이상의 소집단	많은 수의 아동
기간	단기적	중기적	장기 혹은 영구적
영향 정도	아동이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	아동이 대처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아동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
취약 아동	-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 확인

주: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사정단계2에서는 아동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제안된 법이나 정책을 사정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비입법적 방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영향 평가 주체는 마지막 권고 단계에서 법 혹은 정책의 안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수정이 필요한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며, 앞서 언급한 부정적 영향의 개선에 대한 입법적, 비입법적 선택사항은 다음을 포함 한다: (1) 안의 수정; (2) 부정적 영향을 개선할 행정적 절차나 정책 프로그램 도입; (3) 타 기관과의 연대; (4)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는 아동 대상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 자문(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각 단계별 아동영향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표 3-2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27〉 서부 호주의 아동영향평가조사표

구분	조사내용
초기 스크리닝 단계	1 단계 입법/정책 안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기술 1. 제안된 입법/정책은 무엇인가? 2. 어느 부서의 누가 입법/정책 안 담당자인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 확인 3. 정책안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No: 중단 Yes: 4번 질문으로 4. 3번의 응답이 'yes'라면, 입법/정책 안이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라. 5. 그러한 아동에게 미칠 영향이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가? Yes: 중단 No: 사정(full assessment)단계 진행
사정단계 1 사정단계 1	1 단계: 영향평가 아동에게 미칠 모든 영향 확인 및 조사 6. 아동에게 미칠 영향 조사를 위해 고려된 연구(research) 기술 7.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가? Yes: 어떻게 조사하였는가? No: 왜 아동 대상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8. 관련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조사하였는가? Yes: 누구를 조사하였는가? No: 왜 아동 관련 이해당사자 대상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9. 아동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부정적·긍정적 모두 포함)을 기술하여라.
	2 단계: 발견된 영향의 중대성 발견된 영향의 중대성 평가 10. 해당 지역에서 영향을 받을 아동의 비율은 얼마인가? 11. 입법/정책 안이 특정 아동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Yes: 어떤 아동집단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No 12. 입법/정책 안이 특정 연령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Yes: 어떤 연령의 아동인가. No 13. 입법/정책 안이 지방이나 외진 지역의 아동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Yes: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No 14. 위에 제시한 영향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단기, 중기, 장기 혹은 영구적) 15. 위에 제시한 영향들은 얼마나 중대한가?(소, 중 혹은 대)
	3 단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확인 16. 이 제안은 독점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다루는가? Yes: 문항17로. No: 문항9로 독점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다루는 입법/정책 안 17. 입법/정책 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범주에 속하는가? No: 문항23으로-이 입법/정책 안은 시행되지 않아야 함을 권고 Yes: 문항18로. 18. 입법/정책 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 No: 문항 23으로-이 입법/정책 안은 시행되어야 함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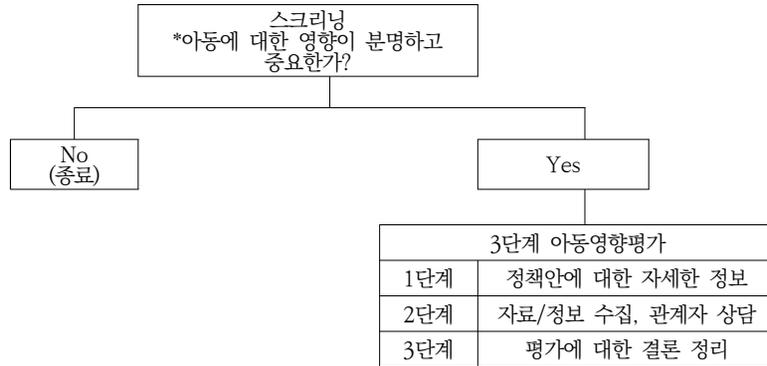
구분	조사내용
	Yes: 사정단계 2로. 독점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다루지 않는 입법/정책 안 19. 입법/정책 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범주에 속하는가? Yes: 문항20로. No: 문항21로 20. 아동 최선의 이익을 넘어서는 다른 이익이 있는가?(예: 불법 행위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 필요성) No: 문항23로-이 입법/정책 안은 시행되지 않아야 함을 권고 Yes: 사정단계 2로. 21.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 No: 문항23로-이 입법/정책 안은 시행되지 않아야 함을 권고 Yes: 사정단계 2로.
사정단계 2	부정적 영향 고려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치 22.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종 권고 23. 입법/정책 안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Yes: 문항24로. No 24.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다면, 문항22에 넣을 방안은 무엇인가?

주: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pp.27-34.

3. 뉴질랜드

2011년 2월, 뉴질랜드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에 따라 뉴질랜드의 사회개발부처(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정책과 입법 개발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입법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스코틀랜드의 Child Rights and Wellbeing Impact Assessment를 채택하여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 CIA)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MSD, n.d.a). CIA 도구는 유엔아동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 및 입법안의 아동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 측정에 그 목적이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기관이 정책 및 입법안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직·간접, 그리고, 단기 및 중·장기 영향력과 영향력의 정도(positive, neutral, negative)를 확인하여, 분석하고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MSD, n.d.a).

[그림 3-8] 뉴질랜드 아동영향평가 단계



주: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CIA 도구는 정책과 법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비영리 단체나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동영향평가 스크리닝지(CIA screening sheet)와 3단계 아동영향평가(three step full CIA)로 구성되어 있다. CIA 스크리닝지는 정책 혹은 법률안이 18세 이하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화에 초점을 두어 사정한 후 3단계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스크리닝 결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유엔아동권리협약 사항을 포함하는 3단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다(MSD, n.d.a).

3단계 아동영향평가는 하나의 정책이나 법률안이 다양한 아동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스크리닝지보다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하며, 스크리닝지로 아동영향평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때, 관계자간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중요한 입법, 서비스 계획이나 실행, 그리고 예산 계획을 포함하는 정책 관련 제안 등에 대해 3단계 아동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MSD, n.d.a).

- 1단계에서는 스크리닝 단계를 거친 정책안이나 입법 등에 대한 보다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한다. 아동의 행복, 빈곤, 발달, 학교 업무나 출석, 문화 활동 참여, 여가 및 오락 참여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MSD, n.d.b).

- 2단계에서는 양적·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는 서로 다른 아동 집단(예: 소수민족, 보호체계 아동,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영향, 직·간접적 영향, 단기·중기·장기적 영향, 긍정·중간·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시적이지 않은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조사하고 아동을 포함한 관계자도 조사한다(MSD, n.d.b).
- 3단계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아동에게 미칠 가장 중요한 영향은 무엇인지, 소수 민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아동들에게 미칠 다른 영향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법률에 수정이 필요한지 혹은 철회나 옹호 여부를 밝힌다(MSD, n.d.b). 단계별 구체적인 문항은 <표3-28>에 제시한 바와 같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 n.d.a)는 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정 집단 아동이나 양육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될 지라도 절대다수의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나 서비스 혹은 법률안은 결정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아동영향평가(CIA)의 일환으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우선,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많은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있는 유관 기관,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자 등도 유용한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3-28> 뉴질랜드의 아동영향평가조사표

구분	조사내용
스크리닝 지	1. 정책안은 무엇인가?-정책안의 의도, 타임 라인 및 구현을 포함하여 정책 제안서를 설명. 정책안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도달 할 것인지 고려. 정책 제안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지 고려. 아동이 정책안의 의도 된 목표대상인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지 고려(예: 가족, 공동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아동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정책안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중립적 또는 부정적 영향과 그것이 얼마나 뚜렷하고 중대한 영향인지 요약.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 고려(예: 초창기, 교육, 청소년 사법부 또는 아동 케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안은 명백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구분	조사내용
	<p>수 있고, 주택, 환경, 교통 또는 복리 후생 영수증 신청서와 같은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명백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음). 서로 다른 그룹의 아동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수준이 다른지 여부 고려. 얼마나 많은, 또는 어떤 그룹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고려.</p> <p>3. 마오리족 아동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마오리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중립적 또는 부정적 영향 요약. 제안이 자녀 또는 젊은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고려. 이 정책안이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지, tikanga (마오리 제도와 관습에 따라 올바른 일을하는 올바른 방법)와 Te Ao Māori (마오리 세계관)와 일치하는지 고려.</p> <p>4.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포함되었는가?</p> <p>5. 발견된 아동에 미칠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가?-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영향이 뚜렷하고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면 3단계의 아동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스크리닝 만으로 충분.</p>
<p>아동영향평가 단계</p>	<p>정책안의 상세 내용</p> <p>1. 정책에 대한 설명</p> <p>2. 이 정책안의 더 넓은 영역 간 맥락은 무엇인가?-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와 아동 관련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웰빙, 아동 빈곤, 아동 발달, 학교 참여 및 출석, 문화적 참여,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참여). 정책안이 다른 기준 및 / 또는 계획된 정부 정책 및 업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디에 위치하는지 고려. 특정 제약 사항, 혹은 다른 관련 배경 정보(예:각료회의결정) 가 있는지 고려.</p> <p>3. 정책안 일반적인 아동의 권리와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는가?-다음 아동 권리 협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조 - 협약은 인종, 종교, 능력,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을 하든지,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 제 3 조 -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 4 조 - 정부는 아동 협약의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 • 제 5 조 - 정부는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배우도록 해야 한다. • 제 6 조 - 어린이는 생명권을 가진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 12 조 - 어린이는 성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의견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 <p>자료/증거 수집, 관련 이해당사자 상담</p> <p>1. 정책안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나?-질적 및 양적 증거의 조합을 사용하여 아동에 대한 정책 제안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숫자 및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그룹에 미치는 영향 포함) • 직접 및 간접, 단기, 중기 및 장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및 차별적 영향 • 정책에 새로운 정책 영역이 관련된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의 중대한 변화 • 환경적 정책안(예 : 수로 차단)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같은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예: 레크리에이션 / 자연에 대한 아동의 접근).

구분	조사내용
	<p>증거의 질 고려 - 최신의 관련 정보인가? 그 정보는 아동의 견해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p> <p>2. 정책안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정책안의 잠재적 이익 또는 긍정적 영향 요약. 어린이의 탄력성이 향상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 중립 또는 부정적인 영향 설명.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는지 고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제안을 수정하거나, 영향을 완화하거나,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옵션 고려.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분명한 방법이 없다면, 이에 대해 명백히 서술 되어야 함.</p> <p>3. 정책안은 여러 아동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아동 집단이 영향을 받는가? 여기에는 여러 연령층의 아동, 마오리, 태평양 사람들, 고립 된 어린이, 보육 / 청소년 사법 시스템 어린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LGBTI, 난민 및 이주 인구, 성별 그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평가에서 서로 다른 그룹의 아동과 청소년, 또는 아동과 다른 집단간에 경쟁적 이익이 확인 되었는가? whānau, 부모 및 주양육자와 같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도 고려하였는가? 제안서가 특정 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집단이 아닌 왜 그 특정 집단의 아동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목표대상 아동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는가? - 잠재적 완화책은 무엇인가? 정책안은 화카파파 (Whakapapa)와 허나가탕가 (Whanaungatanga) 아동을 모두 고려하는가?</p> <p>4. 정책에 마오리족을 위한 특별한 영향이 있는가?- Waitangi 조약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의 근원. 정책안은 Waitangi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을 따라야 함. 다음을 포함하여 아동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정책안의 영향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8 조 - 정부는 이름, 국적 및 가족 관계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제 30 조 - 아동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 31 조 - 아동은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놀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마오리 아동에게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있는가? • 정책안은 whānau, hapū, iwi 또는 family 그룹에 소속 된 아동에게서 얻은 이익을 지지하는가? <p>5. whānau와 더 넓은 hapū, iwi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정책안의 영향은 무엇입니까?</p> <p>6. 아동의 견해가 CIA의 근거 자료의 일부라는 것을 보장하는가? 다양한 아동 그룹과 상의 하였는가?- 아동의 의견은 제안 된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듣게 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 조언을 제공 할 것임. 지침</p> <p>7.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기관 밖의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한 적 있는가?-다른 사람들과의 상담은 아직 고려되지 않은 제안의 다른 영향을, 특히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및 청소년: 다른 그룹의 아동과 상의 한 적이 있는가? 아동의 관점을 제공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사용 된 커뮤니케이션 자료와 메커니즘은 아동의 참여 가능성 및 영향력에 영향을 미침.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의 참여를 도울 수 있음. • Whānau, hapū, iwi: 정책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기

구분	조사내용
	위해 whānau, hapū 및 iwi와 어떻게 상의 했는가? • 기타 이해 관계자 및 관심 있는 그룹: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특정 목표로 하는 협의가 필요한가? 어떻게 그들과 상의 하였는가? -이러한 그룹은 중앙 및 / 또는 지방 정부, NGO 또는 관련 크라운 기관 (예 : 인권위원회, 아동 위원장 또는 개인 정보 보호 위원실)과의 접촉도 포함될 수 있음.
3 단계: 영향 요약	1. 평가 결과 제안 된 정책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아동의 복지에 대한 정책 제안의 영향에 대한 결론. 2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다양한 아동 그룹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마오리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영향 2. 평가 결과 제안 된 정책에 대한 권고 사항은 무엇인가?- 평가에 근거하여 제안서 변경을 권고하고 있는지 여부 기재. 아동의 관점에서 CIA가 정책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지 서술.

주: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d.b). pp.2-7.

4. 시사점

본 연구에서 검토된 스웨덴 자료는 아동영향평가의 기본 기법과 모형을 제시한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영향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아동최선의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아동권리 영역이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이외에 향후 초래될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검토, 아동의 의견 수렴 정도와 방법,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아동외에 사회, 개인, 특정집단의 관점에서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 등이 아동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스웨덴 사례가 아동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는 좀 더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옴브즈만을 중심으로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다만, 모든 사례에서 관련전문가, 아동, 이해당사자의 역할이 적극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을 아동영향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스웨덴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다양한 권리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측정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두 국가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소수의 특정 집단 아동에게 미

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소수의 특정 집단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평가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체계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 다수의 일반적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혹은 법 안이라 할지라도 특정 소수 집단의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법/정책 안은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 보호체계의 아동, 혹은 교외지역 거주, 빈곤 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아동의 특성과 환경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성상, 원주민 아동에게 문화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아동영향평가에 드러나 있었다. 우리나라도 2018년도 현재 다문화 아동이 2012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 122,212명에 이르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18). 따라서 아동정책영향 평가시 다문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 가정외보호, 빈곤 등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 모두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우선, 초기 스크리닝을 통해 어떤 정책 혹은 법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스크리닝 과정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혹은 입법, 사업 안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아동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안을 포착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영향평가가 필요한 안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집중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아동영향평가 과정은 효과적이고, 빠른 아동 영향평가를 수행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심층평가 단계의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증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 직접 대상자인 아동과 해당 영역의 관련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아동의 참여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입법, 혹은 사업에 대해 아동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며, 당사자인 아동 관점의 아동친화적인 정책, 입법, 혹은 사업 개발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옹호할 수 있는 전문가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조언과 기술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송이은, 2017).

마지막으로, 두 나라는 아동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포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어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정도가 미미한지, 중간 정도인지, 혹은 아주 큰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즉각적 혹은 단기적인지, 중·장기적인지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아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부 호주의 경우, <표 3-27> 과 같이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입법, 혹은 사업 안의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결정을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동영향평가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송이은, 2017), 우리나라에서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아동영향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대응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안

제1절 평가대상 및 영역

제2절 대상 선정 및 평가 체계

제3절 도입방안

4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안 <<

제 1절 평가대상 및 영역

1.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된 사항과 전문가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 조사는 2018년 11월5일~11월 16일 까지 2주간 관련분야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e-mail 조사(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관련 전문가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전체		30	100.0
성별	남성	15	50.0
	여성	15	50.0
전공	아동및청소년복지	18	60.0
	사회	6	20.0
	행정	3	10.0
	교육	2	6.7
	언론	1	3.3
소속	대학	16	53.3
	연구기관	12	40.0
	기타(세이브더칠드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	6.7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50.0%이며 전공은 아동및청소년복지분야가 6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3.3%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은 아동정책영향평가 범위 및 영역, 평가체계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평가대상의 범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평가 대상의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평가 대상의 전제 조건은 아동의 삶의 질 관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대상을 좀 더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사업으로 제한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자치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관련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 범위를 고려할 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어떠한 범위가 적정한지 조사한 결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60%로 협의의 개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 모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기타의견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조사되었다.

〈표 4-2〉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	18	60.0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1	36.7
기타 (아동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1	3.3
계	30	100.0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대부분은

애초에 아동복지 및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 종로구의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아동영향평가 틀 안에서 아동 대상의 정책은 일부 참여권 및 홍보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을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이라고 권고함에 따라 대상의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유럽연합의 몇 국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만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송이은, 2017).

평가 대상에는 사업, 법, 계획등에 대해서 모두 실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이밖에 예산, 조례에 대해서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대상

(단위: 명, %)

구분	빈도	%
법	27	90.0
사업	30	100.0
계획	25	83.3
기타(예산, 조례)	4	13.3
계	86	286.6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활동에서의 새로운 지침이나 정책,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 중앙, 지방 정부, 자치구 차원의 연간 예산안, 조직의 새로운 정책이나 다른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회 모든 수준에서의 조직적 행정적 변화(Sylwander, 2001). 국내의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은 사업, 법, 계획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사업, 법제·개정, 신규 계획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밖의 경우, 장

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나 계획의 경우 신규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에 대해서도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된다. 다만, 도입 초기에 모든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그는 신규, 중·장기 기존 사업, 예산의 순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3. 평가영역 및 항목

일반적으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는 다음과 같다(한국유니세프 홈페이지). 우선,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는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며, 보호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한다. 발달의 권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권리는 자신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는 이러한 4대 권리를 바탕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가능하다.

다만, 해외 사례의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가 매우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는 기본 평가서식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아동영향평가는 모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한국 유니세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영향평가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영역 및 질문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조사하였다. 국내 영향평가 서식은 타 영역(법)과의 갈등여부, 아동의 4대권

리 고려여부, 무차별의 원칙 준수 여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여부, 의견수렴 및 홍보, 사후아동영향평가 필요성, 권리증진 효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평가필요성과 해당 영역 평가를 위해 제안된 질문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 타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에 대한 검토(평가)

타 법규와 조례와의 갈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3.3%, ‘아니오’라는 응답이 16.7%로 나타났다. 타 법규와 조례와의 갈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해당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0.0%, ‘아니오’라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표 4-4〉 타 법규 및 조례와의 갈등에 대한 검토(평가)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1) UN아동권리협약					
1-2) 아동청소년법					
1-3) 기타 법규 및 타조례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5	83.3	예	20	80.0
아니오	5	16.7	아니오	5	20.0
계	25	83.3	계	20	80

타 법규와 조례와의 갈등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질문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경우의 의견은 갈등우려의 용어가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갈등’보다는 ‘충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구체적 법령 또는 법안의 내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의 문항은 제시된 협약이나 법규 및 조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갈등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검토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3.3%, ‘아니오’라는 응답이 16.7%로 나타났다.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4.0%, ‘아니오’라는 응답이 16.0%로 나타났다.

〈표 4-5〉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2-1)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2) 보호권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3)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2-4)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예	25	83.3	예	21	84.0
아니오	5	16.7	아니오	4	16.0
계	25	83.3	계	21	84

아동의 4대 권리 영역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질문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설명된 내용에 관련사항을 더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경우(생존권에 출생등록권 추가, 보호권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그룹(장애아동, 난민아동, 이주아동, 탈가정 아동 등)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및 성

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양육책임을 위해 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추가, 발달권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그룹이 교육을 받을 권리 추가), 서울시의 6가지 내용(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으로 준거틀을 잡을 것을 제안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더 세분화된 질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4대권리 영역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6개 영역과 같이 좀 더 구체화된 평가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무차별원칙에 대한 검토

무차별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3.3%, ‘아니오’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났다. 무차별원칙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8.6%, ‘아니오’라는 응답이 21.4%로 나타났다.

〈표 4-6〉 무차별원칙에 대한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8	93.3	예	22	78.6
아니오	2	6.7	아니오	6	21.4
계	28	93.3	계	22	78.6

무차별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질문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을 구체화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난민아동(난민신청아동,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미등록이주아동/장애아동/성소수자 아동/성착취피해아동/가

정박 아동/청소년 실습, 청소년 알바 등 노동하는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와 같은 형식으로 하위항목으로 구체화된 질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의 아동들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아동을 무차별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6.7%, ‘아니오’라는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0.8%, ‘아니오’라는 응답이 19.2%로 나타났다.

〈표 4-7〉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6	86.7	예	21	80.8
아니오	4	13.3	아니오	5	19.2
계	26	86.7	계	21	80.8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질문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평가자나 답변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평가도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 기준의 기반이 되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규범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와 같은 단순한 문항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제안된 내용으로 질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는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장치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항목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해당 항목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마. 참여권(아동의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참여권(아동의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3.3%, ‘아니오’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났다. 참여권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8.6%, ‘아니오’라는 응답이 21.4%로 나타났다.

〈표 4-8〉 참여권에 대한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8	93.3	예	22	78.6
아니오	2	6.7	아니오	6	21.4

참여권(아동의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 경우, 질문문항을 좀 더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연령대별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포함되었는지 등 좀 더 구체화해서 질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가로 단순한 아동의 의견수렴은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아동의 의사가 의제화 되는 제반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할 때,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계획 검토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계획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0.0%, ‘아니오’라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계획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5.2%, ‘아니오’라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다.

〈표 4-9〉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계획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를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7	90.0	예	23	85.2
아니오	3	10.0	아니오	4	14.8
계	27	90	계	23	85.2

아동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질문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과 현재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홍보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사. 사후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

사후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6.7%, ‘아니오’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질문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3.1%, ‘아니오’라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표 4-10〉 사후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9	96.7	예	27	93.1
아니오	1	3.3	아니오	2	6.9
계	29	96.7	계	27	93.1

사후평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질문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 아동영향평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의견과,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더 중요하기에 단순히 필요성 여부를 묻기 보다는 사후아동영향평가 수행시 기대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수행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히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할 필요는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질문문항으로는 그 필요성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후영향평가가 왜 필요한지 묻는 문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 해당 정책의 아동권리 증진 효과에 대한 검토

아동권리 증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3.3%, ‘아니오’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증진 효과 검토를 위한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질문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60.7%, ‘아니오’라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표 4-11〉 아동권리 증진 효과에 대한 검토

(단위: 명, %)

문항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8-1) 높음() / 보통() / 낮음()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예	28	93.3	예	17	60.7
아니오	2	6.7	아니오	11	39.3
계	28	93.3	계	17	60.7

아동권리 증진 효과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타 항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의 3점 척도는 너무 협소하여 4점 척도 이상의 선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권리증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권리영역별로 질문하는 것을 제안한 경우와 효과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지표에 따라 얼마나 변했는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아동영향평가 영역의 특성상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의 성격이 강할 경우 이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를 통한 검토보다는 권리영역별 효과성을 구체화 해서 질문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영역별 검토 결과 종합

앞서 조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12>와 같다. 기존 자치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사표를 바탕으로 논의된 8개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동영향평가 영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법률·조례 등과의 갈등 영역, 4대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권리 영역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유형으로든 아동정책영향평가 영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영역에 대한 질문문항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문항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조사되었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 최선의 이익, 무차별의 원칙 영역의 질문항목으로 현재의 문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적인 문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이밖에 이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검토, 환경 및 행복추구권, 아동복지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지속성·일관성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표 4-12> 영역별 검토결과 종합

(단위: 명, %)

영역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1. 타 법규 조례와의 갈등	예	25	83.3	예	20	80.0
	아니오	5	16.7	아니오	5	20.0
	계	30	100	계	25	100
2. 4대권리	예	25	83.3	예	21	84.0
	아니오	5	16.7	아니오	4	16.0

영역	해당 영역의 검토(평가) 필요 여부			질문문항의 적절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4. 아동 최선의 이익	예	26	86.7	예	21	80.8
	아니오	4	13.3	아니오	5	19.2
	계	30	100	계	25	100
5. 아동 의견수렴	예	28	93.3	예	22	78.6
	아니오	2	6.7	아니오	6	21.4
	계	30	100	계	25	100
6. 아동·이해당사자 홍보	예	27	90.0	예	23	85.2
	아니오	3	10.0	아니오	4	14.8
	계	30	100	계	25	100
7. 사후아동영향평가 필요성	예	29	96.7	예	27	93.1
	아니오	1	3.3	아니오	2	6.9
	계	30	100	계	25	100
8. 아동권리 증진 효과	예	28	93.3	예	17	60.7
	아니오	2	6.7	아니오	11	39.3
	계	30	100	계	25	100

이와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서식을 제공할 경우, 영역에 대한 세분화와 그에 따른 질문문항을 구체화 하여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 2절 대상 선정 및 평가 체계

1. 대상 사업 선정 방식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성별영향평거나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표를 활용하여 사업담당자(부서)가 자가 선정하는 방식과, 고용영향평거나 문화영향평가와 같이 평가대상을 사업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3의 기관이나 협의체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평가부처 및 관련 협의체에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하는 방식이 더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이며, 자가 점검을 통한 선정방식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그쳤다. 큰 틀에서 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은 영향평가 부처 및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방식

구분	(단위: 명, %)	
	빈도	%
영향평가 담당부처 및 관련 협의체에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6	86.7
사업담당부서(부처)에서 자가점검을 통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2	6.7
기타	2	6.7
계	30	100.0

2. 평가체계

평가대상 선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평가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평가대상 선정 방법에 따라 두 가지 평가체계 (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조사하였다. 1)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평가담당 부처 및 협의체에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지정하여, 이에 대해 전문기관(센터)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체계이며, 2)안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가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표준화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와 전문가 검토 및 심의 체계를 거치는 방안이다. 각 안에 대한 적절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안에 대한 적절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나타났으며 2안에 대한 적절성 점수는 7.07점으로 1안이 좀 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결과와 같은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 선정과정의 경우 2가지 방안 중에 선택하도록 제시되어서 두 가지 안에 대한 응답률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평가절차의 경우 2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의 적절성과 장·단점을 조사해 상대적으로 적절성의 차이가 덜하다는 차이가 있다.

〈표 4-14〉 각 안에 대한 평가 체계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1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평가담당 부처 및 협의체에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지정하여, 이에 대해 전문기관(센터)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체계	30	7.50	1.33	9	3
2안)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가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표준화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와 전문가 검토 및 심의 체계를 거치는 방안	30	7.07	1.48	9	4

가. 1안 : 전문기관(센터) 중심 평가 체계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안의 평가체계에 따르면 대상 사업은 문화영향평가나 고용영향평가와 같이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정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평가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체계이다.

〈표 4-15〉 1안 : 전문기관(센터) 중심 평가 체계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대 상 선 정 (중앙) - 부처별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 (지자체) -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지자체 (→보건복지부)
↓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평가 요청서 제출 - 해당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요청서 제출	지자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센터 전문가	평가 실시 - 전문평가센터에서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센터 전문가
↓		
보건복지부 (→해당 부처)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반영계획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계획 제출	지자체 (→보건복지부)

1안과 같이 전문기관(센터) 중심의 평가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밖에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및 의견반영, 보건복지부 중심의 영향평가 진행과 결과 환류의 체계성, 체계화하기 용이하며 사업대상 선정의 편의성 및 진행의 효율성이 장점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1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평가체계는 절차가 명료하고, 초기 도입 시 수행하기 적절한 체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체계로 이해되고 있었다. 반면에 해당 평가체계의 단점은 실제 사업담당자가 평가절차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주체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관된 평가지표를 활용할 경우 중앙사업과 지자체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탑다운 방식이라 형식적이 될 가능성, 지자체의 소극적 사업신청, 협의체 기능이 약하여 협의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 평가대상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점, 전문평가센터

의 역량의 한계, 전문평가센터의 인력구성과 운영방식에 따라 평가결과와 신뢰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지역사회 수준의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밖에 현 체계의 보완 내용으로 현장컨설팅, 평가결과의 활용(반영계획)에 대한 사후 검토, 평가진행시 실무자와 협의 진행 등의 절차가 추가될 것을 제안하였다(부표 참조).

나. 2안 : 사업담당부서 중심 자체 평가 체계

사업담당자 중심의 평가체계는 국내의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가 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표준화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심의 체계를 두는 구조로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4-16〉 2안 : 사업담당부서 중심 자체 평가 체계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대 상 선 정 (중앙) - 부처별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체크리스트 작성)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 (지자체) - 부서별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체크리스트 작성)	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	평가서 제출 - 해당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중앙)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전문가, 전문평가센터) (지자체)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전문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평가담당부서 전문가
↓	검토의견 통보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해당부서)
↓	반영계획 제출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반영계획 제출	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	평가결과서 제출 및 취합 (중앙) - 영향평가결과서 취합 (시도단위) (지자체) - 영향평가결과서 제출 (시도단위)	시도평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2안과 같은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의 장점으로서는 자율성, 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이 가능,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 가능, 평가범위 확대 가능, 체크리스트 활용에 따른 평가의 편의성, 평가수행자의 부담 완화, 표준화된 평가를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단점으로는 평가주체의 전문성 결여, 자의성, 체크리스트의 한계, 타 부처(부서)의 협

조 어려움, 현재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형식적이 될 가능성, 지자체의 소극적인 평가수행 등이 조사되었다. 이밖에 2안에 대한 보완의견으로 사전 교육 및 설명회 등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야하며, 평가 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참조).

제 3절 도입방안

1. 평가 대상 및 범위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 정책의 범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 법제·개정, 신규 사업 및 중장기 기존 사업, 신규 계획 및 중장기 기존 계획 등을 대상으로 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에 점차 예산 및 지자체 조례 등으로 평가대상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2. 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계(안)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행은 우선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및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의 평가체계를 수행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궁극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 및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목표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자체 중심의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체계로 나아가기 까지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지자체 자체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에 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계 내에서 일부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안된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에 관해 조사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전문가 중심 평가 체계 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제안된 절차에 평가수행 과정에 사업담당자와 협의과정을 추가하여 사업담당부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구조로 보완 하였으며, 또한 평가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센터에서 요청시 사업담당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환류 방법으로 필요시 평가결과의 반영 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개념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결과 반영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 하였다. 이 경우, 사후모니터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보다 상급기관에서 이를 수행·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7〉 전문가 중심 평가체계 안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대상 선정 (중앙) - 부처별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 (지자체) -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지자체 (→보건복지부)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평가 요청서 제출 - 해당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요청서 제출 - 평가요청서에는 사업관련 기초정보 제공	지자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센터/전문가)	평가 실시 - 전문평가센터에서 평가 실시 - 사업담당 부처(부서)와 협의 - 사업담당 부처(부서) 센터 요청자료 제출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센터/전문가)
보건복지부 (→해당 부처)	평가 결과 통보 - 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지자체)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반영계획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계획 제출	지자체 (→보건복지부)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사후점검 - (필요시)일정기간 경과 후 평가결과 반영현황 자료 제출	지자체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평가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일원화된 평가체계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신청한 사업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정책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와 같은 협의체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의 경우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청사업에 대해서도 제출된 평가요청서와 평가의 필요성 등을 협의체 및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여 최종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아동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양, 시기, 중요성 등)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한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전문평가센터 전문가 중심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며 수행단계는 <표4-18>과 같이 제안한다. 본 평가의 1단계에서는 기존 연구자료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활동(사업 및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주요 영향(부정적·긍정적)을 확인하고 조사하며, 2단계에서는 조사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을 규명하고, 영향의 지속성 및 중요성을 평가한다. 3단계에서는 앞서 분석된 영향이 아동권리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 아동권리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기술하고 누락된 권리영역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필요시 사업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후 권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사업담당 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담당기관은 평가결과 반영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영향평가 절차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평가결과반영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18> 전문가 중심 영향평가 수행 단계(안)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관련 자료 수집 및 영향요소 확인	기존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수집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요소 확인 (긍정적·부정적)
2단계	영향 검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영향의 특성 검토 (영향을 받는 대상 및 규모, 영향의 정도, 영향의 중요도 등)
3단계	아동권리 관계 검토	아동권리 관점에서 조사된 영향을 분석 (권리의 침해 및 보장 여부) UN아동권리 협약 기초 (4대 원칙, 4대 기본권 중심)
4단계	기타사항 검토	타 집단과의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홍보, 후속모니터링 필요 등
5단계	권고사항 마련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마련

3. 자가평가 중심 평가 체계(안)

지자체 사업담당자 중심의 평가체계는 자체평가(담당부서) 중심으로 실제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는 체계이다. 현재 단계에서 차선으로 제안하는 자가평가 중심의 평가체계 안은 다음과 같다. 앞서 해당 평가체계에서 검토된 의견들은 대부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들로 현재의 체계에 대한 보완 의견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기존에 논의된 안을 그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4-19〉 사업담당부서 중심 자체 평가 체계 안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대 상 선 정 (중앙) - 부처별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체크리스트 작성)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 (지자체) - 부서별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체크리스트 작성)	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평가서 제출 - 해당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전문가	평가서 검토 및 심의 (중앙)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전문가, 전문평가센터) (지자체)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전문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평가담당부서 전문가
↓		
보건복지부 (→해당 부처)	검토의견 통보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해당부서)
↓		
해당 부처 (→보건복지부)	반영계획 제출 - 평가서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반영계획 제출	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		
복지부	평가결과서 제출 및 취합 (중앙) - 영향평가결과서 취합 (시도단위) (지자체) - 영향평가결과서 제출 (시도단위)	시도평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제안된 평가체계의 특징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스크리닝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평가대상이 전문가 중심의 평가보다 양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실태를 살펴볼 때, 스크리닝 대상의 사업은 아동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영향평가 모형은 타부서의 협조하에 모든 사업에 대한 스크리닝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크리닝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표4-20>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인지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본격적인 아동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사업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 또한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영향평가 시행 초기에는 당연히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향들을 위주로 고려될 것이나 영향평가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영향의 범위를 점차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영향의 범위를 아동의 가족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 경우 아동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국 가정 내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표 4-20> 대상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요소 (안)

구분	내용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해당 사업이나 정책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예/아니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용 기술 (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가	영향의 정도가 미미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격 영향 평가 수행

평가대상이 선정이 되면 사업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서 평가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세 부사업, 장기 계획, 조례 및 규칙을 담당하는 부서는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관련 근거를 아동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본 평가를 실시할 때 점검 사항은 앞서 제시한 전문가중심평가보다 단순화된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점검표에는 전문가평가와 같은 검토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점검요소를 반영한 점검표는 <표4-21>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할 것

을 제안한다. 우선 해당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영향의 정도와 중요성 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기본권리 중심으로 각 영역에 대한 고려 여부나 정도를 검토한다. 이 경우 ‘예/아니오’ 형식을 취하거나 4점 또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근거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이밖에 다른 집단과의 이해충돌 여부,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홍보계획 여부, 사후모니터링 필요여부 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기술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종검토결과를 척도화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1〉 영향평가 수행 요소(안)

구분	내용
영향 검토	영향의 내용 기술 영향을 받는 대상 규모 영향의 정도 (5점 척도) 영향의 중요도 (5점 척도)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과 아동권리 영역별 검토	1. 아동최선의 이익 고려 여부(정도)/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기술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른 대상(산업)의 이익보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의미함) 2. 특정대상의 배제 및 차별 여부/ 배제 및 차별 사항 및 대상 기술 *특정대상 (장애아동, 난민아동, 이주아동, 성소수자 가정 아동, 탈가정, 아동 등) 3. 아동의 생존권 고려 여부(정도)/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기술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4. 아동의 보호권 고려 여부(정도)/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기술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아동의 발달권 고려 여부(정도)/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기술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6. 아동의 참여권 고려 여부(정도)/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기술 *참여권 (자신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다른 집단과의 이해관계 검토	7. 다른 집단과의 이익의 충돌 가능성 여부(정도)/ 예측되는 충돌 사항 기술

앞에 논의된 과정으로 수행된 아동영향평가서를 중앙정부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각 자치구는 별도의 평가담당 부서(아동영향평가 전담 부서 지정을 전제로 함)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음단계는 아동영향평가 전담 부서의 검토단계로 사업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영향평가표와 관련 근거들을 바탕으로 아동영향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및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고, 검토 결과를 각 사업 담당자에서 통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는 과정은 모든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과, 필요에 따라 일부 사업에만 적용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 할 수 있다. 이후 사업 담당 부서는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 계획을 아동영향평가전담 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의 평가수행에 따른 적절한 모니터링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시도단위로 평가전담부서의 영향평가 결과를 복지부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 체계는 전문가 중심 평가체계에서 도출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단위의 영향평가가 적절히 수행될 때에야 비로소 기대될 수 있는 사항들로 판단된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바로 지자체 단위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앞서 제안된 1안을 중심으로 시범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원활한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체계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데에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크리닝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에 이와 같은 체계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지자체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과 지방자치단체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지역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실시를 위한 평가 양식 및 그에 따른 충분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 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영향평가제도,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관련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영향평가체계는 크게 전문가 중심주의와 자가점검 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가중심 평가주의는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체계로 국내에서는 고용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자가점검 중심의 평가 체계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스스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체계로 국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자가점검 중심의 평가체계 내에서도 전문가의 검토 및 지원이 수반되어 평가결과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평가체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지역적 확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가 갖는 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각 평가체계의 장·단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도입초기에는 전문가중심의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점차 자가점검중심의 평가체계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해서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최초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한 곳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초기에 활용된 영향평가 점검표가 타 자치구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영향평가실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여러 요구조건의 하나로,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실시되었다기 보다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부차적인 목적에 따라 실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정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 있다. 이럴 경우 평가대상은 애초에 아동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활

동들로 크게 아동권리에 위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로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정책에서 크게 개선사항이 도출되거나 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평가 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간과되어온 아동의 참여권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등이 미진한 점 등을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점검표에 따른 자치구의 평가수행 방법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로구의 평가결과를 고려하면, 현행의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된 영향평가는 의미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향후에는 평가대상과 평가 양식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평가 항목에 대한 단답형 점검표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당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나 관련 내용을 함께 기입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점검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활발하게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스웨덴은 아동과 관련된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동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호주나 뉴질랜드도 중앙에서 아동영향평가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며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아동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세부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아동영향평가 제도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관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평가의 주체는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어린이 옴브즈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 유사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아동특성에 따른(원주민) 영향평가 요소가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검토 영역을 구분하고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등 국내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준의 영향평가보다 훨씬 심도 있는 영향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형식적인 행위 이상의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존 자치구의 평가표를 점검한 결과 현재의 평가영역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해당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문항은 좀 더 구체화 된 문항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전문가 중심 평가체계에서 점차 자가중심 평가체

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의 아동권리영향진단에서는 영향을 실적이나 성과와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영향(Impact)이란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니세프, 2017). 이처럼 영향평가는 실적평가나 성과평가와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정책평가들이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는 반면, 영향평가는 (예측되는) 당초에 목표했던 성과나 실적중심의 평가라기보다는 목표했던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권리 및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식의 확산을 위해 수반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궁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저변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이해된다.

제 2절 제언

1. 전문가 중심 평가 도입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시 전문가 중심 평가를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제안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개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문평가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센터에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평가수행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자 간의 평가방법의 차이 등으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평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정책대상의 연령 군이 다른 사업을 각각 선정하거나,

아동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아니한 사업(환경, 교통, 건설 등)을 각기 선정하거나, 아동보호에 중점을 둔 사업과 아동의 주체권에 중점을 둔 사업을 각각 선정하는 등, 특성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각각 시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정책 특성에 따라 현재의 평가체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평가수행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미 제도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보다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지속적인 평가모형 개발

장기적으로 자가점검 중심의 평가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평가모형(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검표의 한계를 최소화 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중심의 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평가영역과 평가지표(항목)에 대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평가모형개발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가모형과 환류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가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평가항목 및 영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영역이나 지표의 구체화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 반대의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 평가 영역이나 지표의 구체화가 바람직한 평가모형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일부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 일부 자치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형의 영향평가표와는 매우 다른 접근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모형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평가 인프라 확충

궁극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지역중심·자가평가중심의 평가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평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요인은 평가체계의 시스템화와 함께 지역적으로 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지역단위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지역단위의 지원조직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원조직을 통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교육통계서비스(2018). 다문화 유형별 학생 수. <http://kess.kedi.re.kr/>
- 김주일, 김옥진, 김아래미, 이상정, 박성준, 한용환(2016).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준현, 오현주(2011). 복지영향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제2권 제2호. 61-103.
- 나태준·이남국·황소하·박여울(2014).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 24권 제 2호 p.127~150.
- 류정희(2016).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3월호. 6-18.
- 박금식, 하정화, 손주영, 박지영(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세경(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년 3월호. 62-72.
- 박영균, 조홍식, 장승원(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15).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1차(2015-2019)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서미경, 박윤형, 문옥륜 외 (2008).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p73~77, 2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영미(2018).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제8권 제2호. 21-49.
-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8).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 서울특별시.
- 성북구청 내부자료(2015a).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 계획.
- 성북구청 내부자료(2015b). 2015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 성북구청 내부자료(2018). 2018년 아동영향평가 등 시행 계획.
- 송이은 (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염유식, 김경미, 성영찬, 이신영(2018).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2017a). 아동친화도시 체크리스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2017b).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추진계획서 및 영향진단 예시(Version2. 22 May 201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윤철경, 김윤나(201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고은혜(2015).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세이브더칠드런.
- 조홍식, 염태산, 김병수(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여향평가. 성북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하정화, 박금식, 손주영(2016).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승애(2012).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옥경(2016). 두 번째 기회: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정책. 「보건복지포럼」 2016년 3월호. 2-4.
- ACT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2015). *Child Impact Assessments. Guidelines and Templates for Use in the ACT Government's Triple Bottom Line Assessment Framework*. Canberra: ACT Government.
-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3). Improving legislation and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proposed legislation and policy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Western Australia.
- Corrigan, Carmel(2006).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ld Impact Statements in Ireland*. Dublin: Office of the Minister for Children.
- Hanna, Kirsten, Ian Hassall and Emma Davies(2006). The Child Impact Reporting.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29, 32-42.
- Hodgkin, Rachel(1999). *Child Impact Statements 1997/98: An Experiment in Child-proofing UK Parliamentary Bills*. London: All-Party Parliamentary

- Group for Children and UNICEF, National Children's Bureau.
- Kriegar, Y. and E. Ribar. 2009.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of Economic Policies: A Case Study from Bosnia and Herzegovina".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9(2): 176-201.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d.a). Impro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ew Zealand: Child Impact Assessment Guide. Wellington: New Zealand.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d.b). Improv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New Zealand: Child Impact Assessment Tool. Wellington: New Zealand.
- Mason, Nic and Kirsten Hanna(2009). *Undertaking Child Impact Assessments in Aotearoa New Zealand Local Authorities : Evidence, Practice, Ideas*. Auckland: Institute of Public Policy AUT University.
- Paton, Laura and Gillian Munro(2006).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The SCCYP Model*. Edinburgh: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Payne, Lisa(2007). A 'Children's Government' in England and Child Impact Assessment. *Children & Society Volume*, 21, 470-475.
- Sylwander, Louise(2001). *Child Impact Assessments*. Stockholm: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25E#undefined>(2018.10.22. 인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2018.10.01. 인출)

한국유니세프(.n.d.)

http://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2018.10.22. 인출)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iass.go.kr>(2018.10.22. 인출)

부 록 <<

[부표 1] 아동영향평가 점검지표(서울시)

	분야		정량지표
	건강·안전·여가·역량·보호·돌봄	법·조례 / 계획	아동 직접 대상
		아동 간접 대상	전체 의견 수렴 중 아동 의견 수렴(반영) 비율
			전체 필요 욕구 중 아동 필요 욕구 수렴 및 반영 비율
정량 평가	분야	평가 대상	정량지표
	건강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질병 예상 감소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안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여가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역량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보호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돌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보호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돌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보호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아동학대 예상 감소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돌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돌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정성 평가	아동 권리 보장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아동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자료: 송이은(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부표 2]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성북구)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매년 단위(세부)사업 용

※관리번호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			
단위사업명	인권도시 성북		
세부사업명	인권교육 실시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수립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없음
		협의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일간)
	확정일정	2014. 1. 1. ~ (계속사업)	
	시행일정	2014. 1. 1. ~ (계속사업)	
첨부자료	필수자료	2015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특별정책과제 - 인권도시 성북	
	기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직원인권아카데미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2014년 상반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결과보고 - 2014년 하반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결과보고 - 2014년 (제5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 2014년 (제6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감사담당관	행정7급	왕주미	2241-2194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자료: 성북구청(2015b)

[부표 3] 아동영향평가 연례점검표(성북구)

작성자	담당부서	아동영향평가부서	작성대상	조례	계획	사업	작성시점	사전점검	사후평가
-----	------	----------	------	----	----	----	------	------	------

아동영향평가 연례점검표(1)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작성서식 2

구분	질문	응답	비고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여타의 아동/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여타의 법규, 타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
무차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긍정적 영향을 받는 대상 부정적 영향을 받는 대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당사자 의견 수렴	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인권위원회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인권위원회
홍보	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교재 및 홍보물 발간
사후 평가 필요성	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에서 1989년 11월 20일 채택.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시

* 당사자 : 아동 본인, 이해당사자 : 아동을 제외한 주변(가족, 주민 등)

자료: 성북구청(2015b)

[부표 4] 아동영향평가 사전점검표(성북구)

작성자	담당부서	아동영향 평가부서	작성 대상	조례	계획	사업	작성 시점	사전 점검	사후 평가
-----	------	--------------	----------	----	----	----	----------	----------	----------

아동영향(장기계획,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점검표

(2014. 4 .5 .)

단위사업(세부사업)명 장기 계획명	인권교육실시
검 토 항 목	
<p>1.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이 복수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부사업) 혹은 장기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 사용)</p> <p>-</p>	
<p>2.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장기 계획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담당부서에서 아동의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 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요청 (필요시 별지 사용) - 업무이행에 대한 부서자체 사후영향평가 필요</p>	
<p>3.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장기 계획에 대해 심층(사전)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1 아동참여기구*의 검토</p> <p><input type="checkbox"/> 2 전문가에 의한 자문</p>	
<p>4.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장기 계획에 대하여 사후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업무이행에 대한 '부서자체 사후평가',</p> <p><input type="checkbox"/> 2 아동대상의 평가 조사</p> <p><input type="checkbox"/> 3 사업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p> <p><input type="checkbox"/> 4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를 위한 '아동참여기구'의 사후검토,</p> <p><input type="checkbox"/> 5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p>	

*아동참여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의회 등

자료: 성북구청(2015b)

[부표 5] 아동영향평가(공통) 사전점검표(성북구)

작성자		담당부서		아동영향평가부서		작성대상		조례		계획		사업		작성시점		사전점검		사후평가	
※ 관리번호		아동영향(공통)점검표																	
-																			
사업명(계획명)		인권교육실시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를 확인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갈등우려 없는 경우					
아동권리 고려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참여	8. 해당업무 담당자는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해당업무 담당자는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해당업무 담당자는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대효과	11. 해당 사업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사업이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권리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 성북구청(2015b)

[부표 6]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양식(성북구)

작성자	담당부서	아동영향평가부서	작성대상	조례	계획	사업	작성시점	사전점검	사후평가
-----	------	----------	------	----	----	----	------	------	------

아동영향평가 시범실시에 따른 의견조회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관련 의견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서식1)	검토의견	비고
		의견없음	
	아동영향평가 연례점검표(서식2)	검토의견	비고
복지정책과	<p>· 설문항목중 무차별에 대한 질문 내용</p> <p>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대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내용 부적절 - 해당사업은 소득 및 연령기준이 정해진 사업으로 주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일반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 - 그러므로 해당 질문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성북구청(2015b)

[부표 8]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담당부서 (종로구)

사전평가 담당부서: 과(팀) 관리번호 :

종로구 사전아동영향평가표

※ []안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1. 구분	[] 사업	[] 계획	[]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3. 평가시점	[] 시행 전	[] 시행 중	[] 시행 후
사전아동영향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범구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아동권리협약		[]	[]	[]
2) 아동청소년법규		[]	[]	[]
3) 기타 법규 및 타조례		[]	[]	[]
2. 해당 사업·계획·조례가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	[]
2)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3)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	[]
4)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	[]
3.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4.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5. 해당 사업·계획·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6. 해당 사업·계획·조례를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 해당 사업·계획·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8. 해당 사업·계획·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높음	[] 보통	[] 낮음
9. 해당 사업·계획·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예: 사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아동당사자의 모니터링 등). <별지작성 가능>				

자료: 종로구청(2016)

[부표 9] 아동영향평표 작성안내문:담당부서(종로구)

아동영향평가표 작성안내

아동영향평가 개요

- 아동영향평가는 우리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임
-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친화도시 선정 원칙 중에 아동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아동 관련 사업, 계획, 조례 및 규칙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의미함
-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책당사자인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임
-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 장기계획, 사업이며, 주체는 평가대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담당자임

아동영향평가(기초자료)

항목	작성요령	비고
구분	- 평가대상의 사업·계획·조례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 표시	
사업·계획·조례명	- 평가대상의 단위사업명, 장기계획명, 조례 또는 규칙명을 기재	
관련규정	- 평가 대상에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기획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법규 및 방침 등을 기재함.	
계획수립일정	- “관계부서협의” 는 정책시행을 위하여 협조해야 할 관계부서 및 협의기관을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 “확정일정” 은 사업, 장기계획의 시행이 확정된 일자이며 조례 및 규칙은 입법이 예고된 일자임. - “시행일정” 실질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일자를 의미(다만, 정책의 기간은 “사업규모, 기간” 란에 작성)	
사업규모	- 규모는 사업계획서 혹은 관련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함. - 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란 처리함(예를 들어, 조례나 규칙의 경우).	
첨부자료	- 첨부자료 중 필수자료의 유형은 중복 선택가능 - 단, 구분에 해당되는 자료는 필수 제출(예를 들어, 구분에 사업을 체크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 만약, 장기계획 또는 조례와 관련이 있다면 유형을 중복체크하여 해당자료를 추가로 첨부) - 기타자료는 필수자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함.	

아동영향평가표		
항목	작성요령	비고
기본 사항	- 구분 및 사업·계획·조례명은 기초자료 작성과 동일 - 평가시점은 본 아동영향평가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아 동 영 향 평 가	1번 문항	- 해당 정책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와 갈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사전에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¹⁾ 에 대한 검토 필요 - 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의 관계는 “관련규정(기초자료)”을 바탕으로 검토
	2번 문항	- 본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정책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각 영역을 고려하여 기획, 운영되는지를 평가
	3번 문항	- 해당사업 또는 계획, 조례 시행에 있어서 배제되는 특정 유형의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특정 유형의 아동의 예시로 장애아동, 저소득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 가정아동, 양육시설아동,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이 있음. - 정책에서 배제되는 특정 유형의 아동이 있는 경우, 9번 문항에 기재
	4번 문항	- 평가대상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기획, 시행되는지를 고려
	5번 문항	- 해당 사업, 계획, 조례를 기획할 당시 아동·청소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 -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 대한 인터뷰, 간담회, 설문 등을 기획과정에서 반영했는지 여부를 의미함.
	6번 문항	- 아동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예를 들어, 평가대상이 아동 및 이해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의 대상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함.
	7번 문항	- 사전/사후 심층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사전심층아동영향평가는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심층 심의, 아동참여기구의 검토로 구성됨. -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는 사후평가 시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하며, 아동 대상의 평가조사,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참여기구, 외부전문가 평가로 구성됨.
	8번 문항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다소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임. - “높음” : 평가 대상이 명확하게 아동을 주요한 대상으로 운영되며, 아동권리와 관련된 영향평가의 주요항목(2번-6번)에서 아동권리를 증진한다는 응답을 한 경우 - “보통” : 정책의 대상에 아동이 포함되거나 영향평가 항목 중에서 몇몇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몇몇의 항목에서 아동의 권리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낮음” : 정책의 대상에 아동이 일부 포함되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 영향평가 항목의 상당수가 해당이 없거나 아동권리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해당없음” : 정책의 대상에 아동이 포함되지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이 없는 경우
	9번 문항	-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과 보완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정책에서 배제되는 특정 유형 아동에 대한 설명 등 작성 가능 - 아동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의견 등

1)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은 “아동”, “청소년”, “어린이”, “소년”, “미성년”, “영아”, “유아”, “장애아동”,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과 관련되어 있는 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의미하는 “학생” 과 관련되어 있는 법 등을 의미함.

[부표 10]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 평가부서(종로구)

사전평가 평가부서: 과(팀) 관리번호 :

종로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 []안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1. 구분	[] 사업	[] 계획	[]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전아동영향평가 평가부서 점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1) 아동영향평가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	[]
2)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	[]
3)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
2.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	[]
2)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	[]	[]
3. 아동권리 관련				
1)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	[]
2)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 유형의 아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5. 아동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의 존재여부와 기능을 검토하고,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3) 해당업무에 대해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6. 사전/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	[]	[]
2)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	[]	[]
3) 해당업무가 아동권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타당하게 검토하였는가?		[]	[]	[]

[부표 12] 사후아동영향평가표 : 담당부서(종로구)

사후평가	담당부서: 과(팀)	관리번호 :
------	---	--------

종로구 사후아동영향평가표

※ []안에 √표시, ▶이하의 내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별지작성 가능)

기본사항	1. 구분	[] 사업	[] 계획	[] 조례	
	2. 사업·계획·조례명				
사후아동영향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해당업무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	[]	[]	
▶ 갈등의 내용					
2. 아동권리 관련					
1) 생존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	[]	
2) 보호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	
3) 발달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	[]	
4) 참여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	[]	
▶ 근거 제시(ex.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결과, 자문 등)					
3.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	[]	[]	
2)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배제 및 차별된 특정유형의 아동유형, 조치내용 제시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 근거제시					

[부표 14] 전문기관(센터)중심의 평가 체계의 장점

구분(영역)	내용
전문평가센터의 전문성, 객관성	영향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시행하므로 결과의 일관성, 전문성이 담보됨.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센터에 다양한 평가 노하우가 축적됨.
	전문성 확보 가능
	평가기관 일원화
	단일한 평가주체가 일관된 평가기준 적용가능 제 3 자 평가방식에 따른 상대적 객관성 담보
	광범위한 정책검토와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함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함
	평가과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전문평가센터의 전문가 평가)
	전문평가센터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지 말고 한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체계적 평가 시스템, 전문 평가센터 설립
사업주체의 참여, 평가주체의 적절성	평가계획 기관과 평가수행 전문기관이 분리되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여짐
	지자체의 자발적 신청을 받음
	평가대상에 대한 공정성과 지자체의 의견이 상향 반영될 수 있는 점
	제대로 선정만 된다면 매우 이상적일 수 있음. 사업을 가장 잘 알고 필요성을 잘 아는 것도 실제 사업담당자일 수 있음. 그러나 유토피아적 생각으로 판단됨.
	담당부처와 협의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두루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
	보건복지부 중심의 영향평가 진행과 결과 환류의 강제성을 지닐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주체, 실행기관 등이 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병행하므로 해당 사업의 주체 및 실행기관이 사업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음.
효율성, 편의성	부처별, 지자체에서 아동복지 및 권리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기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 사업이 이루어질 것임. 또한 전문 평가센터에서 평가한다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공공주체(지자체와 중앙)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대상자의 편의성
	시스템화 하기 용이
	체계적으로 신속한 심의가 가능함.
중아 및 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료 검토 용이	
사업대상 선정의 편의성	

구분(영역)	내용
	현실성이 높음
	흔히 이뤄지는 정책평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부표 15] 전문기관(센터)중심의 평가 체계의 단점

구분(영역)	내용
상황과 여건 반영 없는 형식화	중앙사업과 지자체사업의 평가지표를 같이 했을 때의 문제 발생
	지자체의 특성이나 규모와 관련 없이 동일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정책 간, 지자체 간 기존 토대와의 관련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
	평가절차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포함되지 않음
	사업 주체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타당한 방식이라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각 지자체별 여건과 상황요인이 평가체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확인이 잘 되지 않음
지자체 신청의 문제	평가 전 중앙부처의 평가 설명회 필요함(지자체에서 사업 이해도 낮아 필요한 사업이 신청 안되면 사실상 영향평가의 효과성 낮음)
	협의체와 조율작업이 쉽지는 않을 수 있음.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앙단위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담당부처와 협의체가 선정하기에는 협의체는 너무 애매한 조직입니다. 협의체는 평가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기에 너무 조직의 강도가 약합니다.
	평가가 우수할 사업만 요청할 가능성(평가에 대한 강제 혹은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극단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신청한 사업만 평가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전문평가센터 우려	지자체의 신청에 맞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영향평가 항목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할 것임. 중앙부처의 경우 평가항목대상에 관해 부처별 조율이 꼭 필요함.
	전문평가센터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 존재. 또한 중앙의 전문평가센터가 16개 지자체 전부를 관할하여 수행 가능한지 한계 존재
	(제가 도식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내 전문평가센터에서 중앙 및 지자체의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모두 평가한다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 필요.
	평가주체의 평가부담. 많은 평가자를 투입할 때 일관된 기준적용의 어려움 발생 우려. 평가결과의 편차 발생가능성
	센터의 지정 문제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보건복지부가 모든 평가에 관여하므로 업무가 과중할 수 있음.

구분(영역)	내용
	사후평가 없음
	평가체계가 단순한 경향이 있음.
	협소
	아동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 높음
	지역사회 수준에서 업무담당자의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평가 관련 업무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발생할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등의 과정이 없음.
	횡단적 평가 여부, 평가 결과의 등급 여부가 불명확함

[부표 16] 전문기관(센터)중심의 평가 체계에 대한 기타 의견

구분(영역)	내용
	반영계획에 대한 검토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음
	중앙 차원에서 할 때 지역적 특성의 고려가 부족할 수도 있음
	사후평가 필요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기에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전문 담당자(들)를 배치하고 (평가 질 관리는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센터에서 담당, 전문 담당자들에 의한 평가를 토대로 전문평가센터가 총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분야 사업 중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오히려 누락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함
	사전평가 설명회도 필요.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현장 컨설팅도 필요. 평가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반영)의 방향성을 결정한 이후 절차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
	영향평가서와 함께 지자체 특성에 따른 사례의 성과 고려
	부서에 맡기는 것은 이것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기타 의견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방대한 업무를 평가해야 하는 평가업무량도 고려해야함
	평가단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임. 평가결과와 반영계획에 대한 사후 검토 필요
	전문평가센터에서 평가 후 통보하는 것이 아닌, 실무자와의 협업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위에서 제안한 형식으로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상 선정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강제성(위원회 심의 등)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등의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함.

[부표 17]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의 장점

구분(영역)	내용
자율성, 역량강화	자율성
	평가대상이 스스로 평가한다는 점
	위의 평가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 평가관련 노하우, 역량이 축적될 것으로 보임. 담당자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아동정책영향 평가 관련 사항을 염두해 둘 것 같음.
	공무원의 역량강화의 기회
	다양한 평가관련자(공무원 포함) 각자의 업무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면서 협업하고 공무원 업무부담도 적을 것으로 보임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취득 잘하고 있는 사업만 부각시킴
	업무가 중앙정부로 집중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이 가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가능 아래로부터의 평가라서 좀 더 자율적이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장점
지자체 참여, 평가영역 확대가능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함
	지자체가 참여함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한 아동영향평가가 가능하다.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선정하고 정해진 틀에 의해 자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사업간 상대적 평가 가능
편의성, 업무감소 등	편의성
	피평가자의 자가평가에 따른 수행방법의 간편성 평가수행자의 부담완화
	시간 절약
	빠른 도입 가능성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다소 덜어 짐. 평가 담당 부서가 있으므로 평가의 전문성이 활용 될 수 있음.
	담당부처의 평가업무가 경감됩니다.
	사업평가의 편의성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가점검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업무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기타	절차가 명료함
	중앙의 전문평가센터와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평가하는 체계
	처음 평가를 시작하는데 단계에서는 바람직함.
	표준화된 평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
	구체적인 평가영역별로 각 주체별로 그 역할분담체계가 잘 되어 있음

[부표 18]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의 단점

구분(영역)	내용
평가주체 전문성, 자의성 우려	사업부서의 전문성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사업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평가서 작성 수준에 편차가 클 것 같고 평가서 검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음.
	공무원 역량 간 편차로 인해 수행 수준에 편차 존재 가능성 높음
	주관적
	평가대상에 모두 부합되는 체크리스트 구성의 어려움 지자체의 자의적 평가 또는 유리한 평가 수행 우려
	체크리스트만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
	의견수렴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각 지자체별 평가기준의 공정성, 타당성확보가 어려움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준의 다양한 평가결과 도출 가능
평가대상 사업 선정 문제	평가 전 중앙부처의 평가설명회 필요함(지자체에서 사업 이해도 낮아 필요한 사업이 신청 안 되면 사실상 영향평가의 효과성 낮음)
	잘못되고 있는 사업을 누락시킴으로서 잘못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상실
	평가사업 선정과정이 자의적일 수 있음, 중앙과 지자체가 이중으로 평가서를 검토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함
	자가 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 다소 모호함. 명확한 근거 몇 인 이상 사업장이라던지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선택하면 될 듯함.
	대상선정과정,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부처별 지자체별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담당부서에서 재량적 편의적 판단으로 사업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신청한 사업만 평가
업무협조	행정자료 협조나 사업이해 측면에서 원활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음
	평가 전문 부서와 각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있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음.
	평가의 공정성과 잡음이 예상되며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의적입니다
기타	평가 절차가 단순한 경향이 있음.
	지자체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현재 성별영향평가 방법과 유사하며, 평가가 내용보다는 형식으로 흐릴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구분(영역)	내용
	뤄져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부표 19] 담당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및 전문가 검토·심의 체계에 대한 기타 의견

구분(영역)	내용
기타 의견	사전 교육 및 설명회,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할 필요 있음
	아동분야 사업 중 사실 평가가 더 필요한 사업이 누락될 가능성 있음
	사전평가 설명회도 필요.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현장 컨설팅도 필요. 평가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반영)의 방향성을 결정한 이후 절차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
	평가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시간분배에서는 적절할 수 있음
	사후관리가필요함
	평가담당 부서 전문가의 네트워킹 등 활성화
	아동영향평가는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아동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 프로세스 상 평가대상을 선정 후에 해당부서에 대한 영향 평가요청서 제출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중앙부처는 전문평가센터,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하는 구조인데 연도별 사업수가 많지 않다면 전문평가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평가의 일관성)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평가 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방안이 요구됨	